

사회복지법제

-배포용 교안-



목 차

사회복지법제 강의계획서..... 3

중간고사 범위

1주차 1차시 - 법의 이해.....	8
1주차 2차시 - 일반법의 분류와 사회복지법의 이해.....	11
2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14
2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과 원리.....	18
3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I).....	20
3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II).....	24
4주차 1차시 - 근대적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I).....	27
4주차 2차시 - 근대적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II).....	30
5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체계.....	36
5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분류.....	39
6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I).....	43
6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II).....	47
7주차 1차시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I).....	53
7주차 2차시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II).....	57

기말고사 범위

9주차 1차시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I).....	61
9주차 2차시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II).....	64
10주차 1차시 - 사회보장 기본법(I).....	68
10주차 2차시 - 사회보장 기본법(II).....	71
11주차 1차시 - 사회보험법(I).....	75
11주차 2차시 - 사회보험법(II).....	82
12주차 1차시 - 공공부조제도(I).....	88
12주차 2차시 - 공공부조제도(II).....	90
13주차 1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	95
13주차 2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I).....	102
14주차 1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II).....	107
14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112

사회복지법제 강의계획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교.강사명	김명근	학점/ 이수시간	3학점/ 15주(45시간)
수업목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법의 필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활동인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현장 활동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어떻게 효과적인 사회복지목표를 달성하며 인권을 수호하며 기본권을 보장받게 할 것인가의 구체적 성과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본 교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수업목표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1.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2. 일반법의 원리와 생성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사회복지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콘텐츠 접속 URL	http://www.koreahrd.org				
평가기준	중간고사 : 30%, 기말고사 : 30%, 과제물: 15%, 출석 : 15%, 수업참여도 : 5%, 토론 : 5 %				
성적분포	총점 90점 이상(A ~ A+) : 총 정원의 20%이하 총점 80점 이상 90점 미만(B ~ B+) : 총 정원의 40% 이하 총점 70점 이상 80점 미만(C ~ C+) : 총 정원의 30% 이하 총점 60점 이상 70점 미만(D ~ D+) : 총 정원의 10% 이하 ※ 총점 60점 미만, 출석률 80% 미만은 과정 수료 불가(자동 F 처리)				
주교재 (저자,출판 사,출판년도 포함)	사회복지법제론. 박종팔 외.(2010) 양서원		부교재 (저자,출판사,출판 년도 포함)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 외 (2008). 공동체	
주차	차시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원격/출석)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포함)
1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법의 이해 2)강의주제 :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1) 3)강의세부내용 : (1) 법의 이해		원격	주교재 1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일반법의 분류와 사회복지법의 이해 2)강의주제 : 법과 사회복지법의 이해(2) 3)강의세부내용 : (1) 일반법의 분류 (2)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성격		원격	주교재 1장 동영상, 교안, MP3

주차	차시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원격/출석)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포함)
2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2)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1)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이념	원격	주교재 2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과 원리 2)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2)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법의 실천 원리의 구분 (2) 사회복지법의 기본적 실천원리	원격	주교재 2장 동영상, 교안, MP3
3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I) 2)강의주제 : 시민법과 사회법의 출현과 원리 3)강의세부내용 : (1) 시민법의 출현과 수정 (2) 사회법의 등장배경과 원리 (3)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원격	주교재 3장 부교재 2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II) 2)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원조인 빈민법 전후의 과정 3)강의세부내용 : (1) 빈민법 제정 이전의 과정 (2) 빈민법의 제정과 의의 (3) 개정 빈민법과 관계법	원격	주교재 3장 동영상, 교안, MP3
4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근대적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I) 2)강의주제 : 영국의 사회복지법 시대적 형성 과정의 고찰 3)강의세부내용 : (1) 대처정부 이전의 사회복지법 (2) 대처정부 이후의 사회복지법	원격	주교재 3장 부교재 2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근대적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II) 2)강의주제 : 독일과 한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3)강의세부내용 : (1) 독일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 (2)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	원격	주교재 4장 동영상, 교안, MP3
5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법의 체계 2)강의주제 :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3)강의세부내용 : (1)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원격	주교재 5장 부교재 3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법의 분류 2)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지방자치제의 이해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법의 분류 (2) 지방자치제의 이해	원격	주교재 5장 부교재 3장 동영상, 교안, MP3
6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I) 2)강의주제 :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3)강의세부내용 : (1) 기본권의 개념 (2) 기본권의 종류	원격	<과제> 주교재 7장 동영상, 교안, MP3

주차	차시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원격/출석)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포함)
		(3) 기본권의 헌법상의 규정 ※ 과제물 제출 시 유의사항 1) 분량 A4 3매, 글씨 크기 10.0으로 통일 2) 과제는 hwp(한글), doc, docx(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작성해서 제출 3) 파일명, 본문에 학습자 성함과 과목명을 반드시 기입 4) 제출기한 초과 시 제출 불가하므로 제출기한 확인(기한 내 수정/재업로드 가능) 5)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 - 똑같은 답안이 두 개 이상 나왔을 시 같은 답안 제출자 모두 0점 - 분량(10포인트 기준 A4 2매)이 90% 이하인 경우 (참고문헌 미포함)감점 - 참고문헌이 없을 경우 감점 - 인터넷 검색자료를 복사해 그대로 사용한 경우 감점 - 필수 기재사항(성명, 과목명) 미기재시 감점 ※ 주의 : 타인의 과제를 도용할 경우(모사답안) "0" 점 처리함		<과제> 10주차 종료일 까지 <토론> 11주차 종료일 까지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II) 2)강의주제 : 사회복지기본권의 이해와 권리행사 및 권리구제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구조 (2)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행사 (3)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원격	주교재 7장 동영상, 교안, MP3
7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I) 2)강의주제 : 사회복지 기본권리의 주체와 공적주체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2) 공적주체와 법률관계	원격	부교재 4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II) 2)강의주제 :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이해 3)강의세부내용 : (1) 법인의 개념 (2) 법인의 종류 (3) 사회복지법인	원격	부교재 4장 동영상, 교안, MP3
8주차	-	<중간고사> - 시험범위 : 1주~7주차 강의내용 - 문항수(배점) : 객관식 20문항(각 1점), 주관식 5문항(각 2점) - 시험시간 60분 - 유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원격	중간고사

주차	차시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원격/출석)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포함)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일주일 이내 재응시 1회 부여) - 중간고사 성적 공개 (성적이의신청기간 시)		
9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I) 2)강의주제 :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사의 의의 (2) 사회복지사의 자격	원격	주교재 8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II) 2)강의주제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및 책임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과 제한 (3)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	원격	주교재 8장 동영상, 교안, MP3
10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보장 기본법(I) 2)강의주제 : 사회보장제도와 기본법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해 (2)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 (3)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과 제정	원격	주교재 9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보장 기본법(II) 2)강의주제 : 사회보장 기본법과 수급권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주요내용 (2)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3) 사회보장 수급권과 급여 신청 (4) 사회보장 기본법의 운영과 심의위원회	원격	주교재 9장 동영상, 교안, MP3 리포트 제출 마감
11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보험법(I) 2)강의주제 : 사회보험법의 개관 및 개별법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보험법의 목적과 의의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격	주교재 10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보험법(II) 2)강의주제 : 사회보험 개별법 3)강의세부내용 : (1) 고용보험법 (2)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원격	주교재 10장 동영상, 교안, MP3 토론 제출 마감
12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공공부조제도(I) 2)강의주제 :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3)강의세부내용 : (1) 공공부조의 의의 (2) 공공부조의 특징	원격	주교재 11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공공부조제도(II)	원격	주교재 11장

주차	차시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원격/출석)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포함)
		2)강의주제 : 공공부조 개별법 3)강의세부내용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동영상, 교안, MP3
13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 2)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1)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 (3)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4) 노인복지법	원격	주교재 12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I) 2)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2) 3)강의세부내용 : (1)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3) 건강가정 기본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격	주교재 12장 동영상, 교안, MP3
14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II) 2)강의주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3) 3)강의세부내용 :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 정신보건법 (5) 교정복지	원격	주교재 13장 동영상, 교안,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2)강의주제 :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응과 사회복지법제의 변화 3)강의세부내용 : (1)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원격	주교재 14장 동영상, 교안, MP3
15주차	-	<기말고사> - 시험범위 : 9주~14주차 강의내용 - 문항수(배점) : 객관식 20문항(각 1점), 주관식 5문항(각 2점) - 시험시간 60분 - 유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일주일 이내 재응시 1회 부여) - 기말고사 성적 공개	원격	기말고사

1. 법의 이해

1) 법의 의의

-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준칙으로서 필요한 사회규범

(1) 법은 사회규범이다.

- 사회규범으로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법은 사람들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평화롭게 하는 준칙이다.
- 법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이 준수해야 규범법칙 또는 당위법칙이다.
 - (a)하여야 한다 (명령)
 - (b)하지 말아야 한다 (금지)
 - (c).....해도 좋다 (허용)

(2) 법은 문화규범이다.

- ① "가치"를 지향 한다.
- ② 인간이 현실에서 일정한 가치를 향한 노력으로 생성되는"문화"를 반영 한다.
- ③ 법은 단순히 당위 즉 가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존재 규범이다.

(3) 법은 행위규범이다.

- 법은 행위규범이다. 사람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의 외부적 동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하여서는 안 되거나'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준칙이다.
- ① 어떤 영역에서는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본인도 그렇게 행동할 것을 예상한다. 또 타인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
- ② 경쟁적 사회에서 일정한 질서를 예측
- ③ 법관은 재판의 과정에서 법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행위규범으로 인정하므로 법을 재판규범이라고도 함

(4) 법은 강제규범이다.

- 강제는 법의 본질적 속성으로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력이 필요하다.
-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강행되는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다.
- 도덕, 종교적 명령, 관습과 같은 사회규범을 위반하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지만 법의 위반은 "부정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강제가 있다는 점에서 법은 도덕이나 종교 또는 관습과 구별된다.
- 예링(R. V. Jhering)은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諷ú 같다"하고 하면서 강제를 법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다.

사회복지법제

1주차 1차시 - 법의 이해

2) 법과 도덕의 관계

- (1) 법은 '행위'를 규율하지만 도덕은 '양심'에 호소한다.
- (2) 법은 외면을 규율하나 도덕은 내면의 양심세계 대상
- (3) 법의 기준에서 행위를 평가할 때는 '합법성'의 문제이나 도덕은 '도덕성,윤리'의 문제이다.
- (4) 법에는 '강제'를 수단으로 하나 도덕에는 '강제가 수반되지는 않음'.
- (5) 법은 스스로 존엄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인 도덕 가운데 규범적으로 그 준행이 강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규정하는 "최 소한의 도덕"이다.
 --> 도덕이 법이 될 수도 있고 법의 강제적 규정이 시간과 상황의 변화로 도덕으로 완화될 수도 있다. (예: 빈곤에 대한 자선, 약자에 대한 배려는 도덕적 시혜의 문제였으나 현대에는 사회복지법으로 강화됨)

3) 법의 이념

- 독일의 법학자 라트브루흐(G. Radbruch)는 법의 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나누어 설명

(1) 정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를 말하고 핵심사상은 평등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다시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로 구분

- 평균적 정의 : 개인 간의 거래에서 범죄와 형벌 등과 같 이 동등 가치의 균형유지, 즉 절대적 평등 (ex,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 배분적 정의 : 개인의 능력과 공헌에 따라 명예, 이익을 배분, 즉 상대적 평등 또는 비례적 평등(ex, 누진세, 부유세, 유능한 사람에게 좋은 대우)

(2) 합목적성

- 법의 목적에 맞추어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로 사물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
-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것,
- 국가의 법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되어 정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짐
-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결정

(3)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은 법에 행동하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됨

① 법적 안정성을 위한 요건

-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 법이 쉽게 변경되어서는 안 되고
- 법은 실제로 실행이 가능해야 하고

②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의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 사후법 제정금지의 원칙 : 행위 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사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원칙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함
- 기득권 존중의 원칙 " 구법에 의해 발생한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에 의해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없다는 원칙. (기득권 :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로부터 정 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사유재산보호의 확립에 힘쓰는 원칙이다.)

- 신법 우선의 원칙 : 구법과 신법의 적용 갈등이 있을 경우 신법이 우선

4) 법의 효력

- 법이 추구하는 이념의 실현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도 제한할 수 있음
- 법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체의 합의인 바, 사회구성원이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합의를 어기는 것
- 구성원은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함께
-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수반하는 처벌을 감수해야 함

(1) 법의 실질적 효력

- ① 법이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준수를 요구하는 것
- ② 법의 타당성과 법이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고 준수되는 것
- ③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 내지 권능을 나타내는 타당성과 법이 현실로 지켜지고 실현되는 근거가 되는 실효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

(2) 법의 형식적 효력

① 시간적 효력 범위

- 법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기간을 법의 시행기간이라고 한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은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함

(법률불소급의 원칙)

② 장소적 효력 범위

- 원칙 : 국가의 법은 그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예외 : 치외법권(治外法權)을 가지는 자(외교관)는 자국법이 적용되고 선박, 항공기, 군함도 자국의 영역의 연장으로 보아 자국법이 적용된다.(기국주의, 旗國主義)
- 영토 내의 일부 지역만 시행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나 규칙. 도시계획법은 도시에 한하여, 농지개혁법은 경제상 농지에 한해서 효력발생

(3) 대인적 효력 범위

- 속인주의 : 대한민국의 법령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
- 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
- 기국주의 : 한국의 국기를 단 선박, 항공기의 법률관계에 적용

1. 일반법의 분류

1) 자연법과 실정법

① 자연법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여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사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순리이며 자연적인 질서이다.

② 실정법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 규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성문법이 보통이다. 그리고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은 불문법도 있다.

※ 죄형법정주의

1) 어떤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범죄로 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미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하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원칙.

2)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이에르 바흐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 벌도 없다"

3) 헌법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국내법과 국제법

① 국내법 : 공법, 사법, 사회법

② 국제법 :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3) 공법과 사법, 사회법

① 공법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

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법, 권력 복종관계에 관한 법, 공익에 관한 법

② 사법

민법, 상법, 회사법, 어음법, 수표법 등

③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등 .

- 사회법의 목적 : 국가가 자본주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그 기반 위에 건전하고 문화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국민에게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4) 실체법과 절차법

① 실체법

- 민법, 상법, 형법 등

- 법률관계(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효과 등 실체관계를 정한 법

② 절차법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으로 보통 소송 또는

사회복지법제

1주차 2차시 - 일반법의 분류와 사회복지법의 이해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법

- 실체법과 절차법의 모순 시에는 “실체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실체법이 우선

5) 일반법과 특별법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두 법이 충돌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일반법 :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 특별법 : 일정한 장소, 사항, 사람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

① 장소를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법 :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법(지방자치법)
- 특별법 : 일부 지역에만 적용(조례, 규칙)

② 사항을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법 : 국민의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민법)
- 특별법 : 특수한 사항으로 사생활 가운데 상사에 관한 법 (상법)

③ 인적 대상을 표준으로 한 구별

- 일반법 :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등)
- 특별법 : 특수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 (공무원법, 변호사법 등)

6) 상위법과 하위법

- 법규범은 수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헌법-법률-병령-조례-규칙의 순으로 구성
- 하위의 법이 상위법에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
-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위법의 정함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함

2.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성격

1) 사회복지법의 의미

- 사회복지법은 국가를 강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
- 사회복지법 용어의 의미는 연구자에 따라 사회법, 사회 보장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본 책에서는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으로 통일

2) 사회복지법의 성격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사회법 : 공법(형법)과 사법(민법)이외 제3의 영역의 법
- 국내법
- 국제법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3) 사회복지법과 타 영역법의 관련성

- 헌법 :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의 하위
- 노동법 : 목적이 유사하고,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함
- 행정법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강한 권력 작용, 행정행위에 의하여 실현

사회복지법제

1주차 2차시 - 일반법의 분류와 사회복지법의 이해

- 조세법 :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에 조세법과는 밀접한 관련
- 민법 : 사회복지법에서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형식적 의미(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전이라는 명칭의 외적 형식을 갖춘 법전을 의미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전이 존재하지 않음. 독일의 경우는 사회복지법전 존재.
- 사회보장법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가능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 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 사회복지법은 생성과정이 복합적인 시대적 요인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어서 민법이나 형법과 같이 통일된 법전의 존재형식을 갖추기 어려움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실질적 의미(광의)의 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의 내용, 규범목적, 기능에 따라 내재하는 공통 원리와 가치를 도출하여 개념을 파악
- 사회정의, 사회 형평, 통합,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다운 생활, 행복 추구 등의
-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형식의 법률을 의미
-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 등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복지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 즉 국가에 의해서 최저한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 가정, 단체 등에 대해 보건의료, 교육, 여가, 소득, 노동, 주택, 안전, 거주환경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총체화한 개념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과 관련된 법규
-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로 규정

2.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생존권의 의의

-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사회복지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가치의 총체 의미
- 현대사회가 생존권을 사회복지법의 중요하고도 주요한 이념으로 인정
- 생존권은 국민이 생존에 필요한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해 국가가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로 규정

2) 생존권의 특징

- 복지권, 사회권,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불림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
- 단순한 생존의 의미를 넘어 문화적 생존을 포함하는 의미
- 생존권은 소득, 의료의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한 재활과 사회복귀 까지 포함하는 권리

사회복지법제

2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 기본적 의식주 + 심리적 사회적 욕구 + 문화적 욕구

3) 생존권의 형성 과정

(1) 시민법과 생존권

- 생존권의 형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모순에서 생겨난 산물
- 시민권의 형성 이념인 자유권 사상에 의해 제정된 시민법의 3대 기본원리에 의한 많은 사회문제 야기. 즉, 심한 빈부 격차,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개입에 동의
- 개인생활에서 못 가진 자에 대한 구제는 은혜로 파악하고 가진 자에 대한 보호만을 중요시
- 특히, 노동력은 노동시장에서 등가교환의 원리에 입각한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근로자계층의 생존권 투쟁

(2) 사회법과 생존권

- 생존권 이념은 먼저 노동법에 반영, 즉 노동3권 보장 을 위한 입법 등
- 근로자가 갖고 있는 이중성(근로자로서의 인간, 생활인으로서의 인간) 중 생활인으로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보장법이 출현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 노동자가 생활인으로서 직면하는 각종 생활사고의 비중이 점증 → 생존권 이념은 노동법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보장법을 통한 실현이 불가피
- 사회적 사고(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업재해, 장애, 부양책임자의 사망, 노령 등)는 개인의 생활상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파악
- 산업재해보상법 → 질병보험법 → 노령연금법 → 실업 보험법 순으로 전개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 생활상의 사고를 당하여 자립능력을 상실한 자, 자립능 력을 구비하지 못한 비자립자의 생존권은 노동법·사회보장법만으로는 보장의 한계성 → 사회복지사업법 등장
- 시민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국가적·공적·사적 보호법에 요구하는 권리 등

4)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활동

(1) 국제연합

-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하면서 생존권 천명
 - <세계인권선언 22조>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노력을 통하여 나아가서는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기의 존엄과 자기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 할 권리가 있다."
- 1966년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국제 인권 규약 제정
 - : 인권 규약 A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 인권 규약 B는 시민·정치적 권리 를 규정하고 있음
 - > 자유권 보장과 함께 사회복지와 보장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어 세계 각국으로 '인간의 생존권' 보장의 제도화 촉진의 계기.

(2)국제노동기구

- 1919년 설립되어 근로조건은 물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에 관한 체계와 권리보장의 실현에 기여해옴
-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실업보험(1919), 산재보험(1927), 질병 보험(1933), 노령·폐질·유족연금보험의 실시를 각국에 권고하는 등 사회보장법 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또한 모성보호조약(1952), 산업재해 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1964), 노령·장애인·유족연금에 관한 조약(1967),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1969) 등의 채택을 통해 각국에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권고

(3)세계노동조합

- 1945년 세계노동조합회의에서 생존권과 관련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의 권리성과 사회보장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경주에 합
- 비엔나 회의(1961)에서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 의사, 국회의원, 법률가, 사회보장 실무자 등이 모여 '사회보장 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 -> 모스크바 대회(11961) 에서 '국제사회보장헌장'의 채택으로 이어짐
- 동 헌장의 사회보장 5 원칙은 근로자 무각출의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적 용사고의 포괄성의 원칙, 피보장자의 포괄성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등 제시

(4)유럽회의

- 유럽지역의 사회보장 도입과 발전을 위한 조약과 협약
- 1953년의 노령·폐질·유족의 사회보장에 관한 임시협정, 노령·폐질·유족 이 외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사회원조·의료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 1961년에 유럽사회헌장 채택
- 1964년에 사회보장의 급여에 관한 조약 체결
- 1972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체결을 통해 생존권 보장에 기여.

5)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1)헌법

- 헌법 전문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행복을 추구할 권 리
- 생존권적 기본권(제31조~제36조):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정생활·모성의 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2)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

6) 생존권 규정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

- 생존권은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님
- 국가의 정책을 선언으로 도의적 책임에 불과함

(2) 법적권리설

- 생존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기관이 이를 이할 의무가 있어 국가기관을 구속

사회복지법제

2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1) 추상적 권리설

- 생존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국가도 이에 응해야 함
- 만약 생존권에 관한 입법이 미미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

2) 구체적 권리설

-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고, 또한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통설과 판례

- 통설과 판례는 추상적 권리설이나, 우리 학계에서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체적 권리설을 주장 필요



1.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헌법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사회보장 기본법 10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
 - 사회복지법의 궁극적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 수준의 인권을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권리임
 - 국가에 대하여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함
- 국민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요부호자를 보호하여 인간 다운 생활을 하도록 보장함에 그 의의가 있음
- : 사회적 위험은 실업, 질병, 폐질, 장애, 사망, 출산, 결혼 등
- 사회적 요부호자는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결여된 자로 장애인, 부녀자, 노인, 아동, 저소득자

2) 사회복지 증진

- 사회적 약자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의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
- 일반적으로 약자에게 현금·현물·서비스 형태 보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형태 가 더욱 실질적 형태임
- : 사회복지 서비스는 '전문적 방법(상담, 조언)과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손상 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사회복지 서비스 = 사회복지증진

3) 소득재분배

- 사회복지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징수한 수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 사회복지법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 소득재분배의 기제로서의 기능을 중시해야 함
- 사회복지법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른 조세법 등에 의한 재분배 효과보다 규모가 크고 지속성을 보임
- 공공부조는 조세의 부담 없이 혜택을 받아 소득이 이전되어 재분배 효과 발생
- 사회보험의 소득이전 효과가 가장 큼.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기여금의 납부금액과는 무관하게 질병의 종류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고부담자들의 소득을 이전하는 효과 발생

4) 사회통합

- 사회 구성원 간 또는 사회의 집단, 단체, 기관들 간에 상호 결속력을 갖게 해 주 는 것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사회로부터 배제시키지 않고 더불어 살도록 경제적 자립과 신체적 재활을 도와주는 노력과 목표 일체
- 부의 불평등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으로 사회적 연대 감 형성
- 사회통합의 실현
 - 사회복지법 : 계급 간의 적대감이나 계층 간의 위화감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요보호자의 보호
 -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공동 대처의 원리 실현
 - 공공부조법 :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반적인 지원의 사회적 통합 실현

사회복지법제

2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과 원리

5) 자립·자활

-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의존적 삶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는 자주적·독립적 생활을 하도록 사회적 자원
- 사회보장법 제 7조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의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분야와 관련

2. 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1) 보험의 원리

- 장래 발생할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일정 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위험의 발생 시에 소정의 급여를 받는 상호부조의 원리
- 사회보험법으로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특수직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음

2) 보상의 원리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 상해, 사망 또는 근로능력의 상실으로 본인 과 가족의 생활이 빈곤에 처하게 될 때 국가가 국가의 재정으로 그들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도록 대처하는 원리
- 군사원호보상법,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등

3) 부조의 원리

- 질병 등으로 혼자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요보호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해 줌
- 자립 상실자, 소득능력 결여자, 소득능력 미 확립자 등 요보호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4) 원조(원호)의 원리

-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사람 등에게 사회적 기능의 손상이나 장애를 제거, 경감시켜 사회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원리
-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으로는 상담, 보호, 선도, 사회 심리적 치료, 생활지도, 직업훈련, 재활서비스 등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1. 시민법의 출현과 수정

1) 시민법의 등장

- 법은 역사적 발전의 산물
- 인간을 사회적·신분적으로 고착화시켰던 원시적 고대법의 봉건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면서 새로이 자본주의를 확립한 시민계급사회를 관리할 새로운 법의 출현 필요해짐
- 부르주아 혁명에 의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하며 휴머니즘(인본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
- 시민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강조/ 법치주의의 확립 계기
-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이념으로서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원칙 강조/ 법률 우위의 원칙으로 이어져 입법부 우월의 입법국가의 등장
- 근대의 시민법은 인격 절대주의,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함
- 모든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평등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인격자)의 개념을 개인의 출발로 설정

2) 시민법의 주요 원리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 근대 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해방된 반면에 타인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각자의 독립적 정신에 기초함
- 개인은 자기책임 하에 생활을 영위해야하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재화뿐이라는 전제로 하며
- 각자의 지배하에 있는 재화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며 서로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나 다른 사인(私人)의 간섭배제
- 이러한 사유재산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소유권임
- * 공유지의 비극 -> 소유권의 발생

(2)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 원칙)

- 사인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에 의해 법적인 권리, 의무가 형성
-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형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권리
- 시민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자유권 인정 -> 자유경쟁주의, 자유 방임주의로 발전
- 이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며 개인의 활동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에 맡겨두면 사회는 조화롭게 질서를 잡아가며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

(3)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가 위법뿐 아니라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
- 개인의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음
- 고의나 과실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

3) 시민법 원리의 수정

-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기계화, 도시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 노동자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복지법제

3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I)

사회적 위험의 대두

- 시민법이 근거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정치 경제적 원리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모순적 현상 나타남
- 정치적 민주주의는 법 앞의 평등임에도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 계층 간의 대립 현상의 촉발
- 결국 자본주의의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던 시민법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그 역할의 한계를 노정 하게 되었고,
-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해 지고 절대적 권리를 사회적으로 축소 내지 변화시키는 새로운 질서의 도입이 필요해지게 되었음.

2. 사회법의 등장배경과 원리

1) 사회법의 등장 배경

- 자본주의가 의도하지 않았던 경제 독점화로 인해 극단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고,
- 법 지배의 원리가 약화되는 가운데 그간의 국가의 방임적 입장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불러온 행정국가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 이러한 전반적 사회의 변화는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할 새로운 법질서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음.

(1) 시민법 원리의 결과에 대한 평가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가진 자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결과
경제적 강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에 가지지 못한 자는 상대적 혜택 박탈
부의 불평등 심화 초래, 시민사회의 주요 원리로서의 기능성에 회의
- 계약 자유의 원칙
: 대등한 소자본가 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시대에는 유효한 원리임
: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되면서 자본가와 자본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약의 실질평등의 가능성에 회의
: 생존을 위해 강요된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사회적 현상 하에 자유계약의 가능성 절망
- 과실책임의 원칙
: 피해 거증책임에 대한 불리함으로 결국 가해자(자본가)를 위한 원칙으로 작동
가해자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의 경우에 한정된 피해자(약자)의 이익

(2)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대안의 필요

-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산업자본의 고도화에 따라 구조적 모순 도출
-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균형의 심화로 대량 실업의 현상
- 자본적 강자에 대한 비의도적 혜택 심화로 빈부 격차의 심화
- 시민법이 추구하려한 자유와 평등의 이념 무산

2) 사회법의 기본 원리

(1) 기본 원리

사회복지법제

3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I)

- 계약의 공정성
 - 계약자유 원칙은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계약자유 원칙을 수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회보장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 소유권의 사회성
 - 시민법의 소유권절대 원칙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며 소유권의 행사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한 제한과 구속을 받아야 한다.
- 무과실책임
 -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의 대두·심화로 사용자의 과실 책임주의에서 집합책임주의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기책임 원칙을 수정하여 집합적 책임 원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회법은 주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출현하면서 사용자가 산업재해에 대해 공동부담하게 되는 집합적 책임을 인정하였다.
 - 이러한 집합적 책임은 재해, 질병 등의 원인이 개인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에서 오는 것으로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하여 출현한 것이 사회법임
-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했다'는 사실은 시민법과 사회법이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
- 사회법이 시민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법인가, 아니면 사회법은 시민법과 단절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법인가 하는 논의가 가능함
-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자본주의적 시장 관계와 사회정책이 상호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쟁점과도 직결됨

① 조화론적 관점

조화론적 관점은 시민법과 사회법이 각각 고유한 원리에 따라 성립하지만,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

- 사회법은 시민법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조화의 기능
- 사회법은 시민법의 발전과정에 있다는 조화론
- 사회법을 시민법의 하나의 특별법으로 보는 관점

② 갈등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은 시민법과 사회법을 대립적이고 갈등적 관계로 보는 시각으로 자본주의의 자연스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정 노력의 결과로서 자본주의의 속성과 대립된다는 시각

③ 변증법적 관점

시민법이 발전된 것이 사회법이라고 보는 시각으로 '부정의 부정'을 통해 사물이 발전 한다는 변증법의 관점. (ex, 수증기와 물의 관계는 발전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이라는 시각)

3) 사회복지법의 종류

사회복지법제

3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I)

- (1) 노동법 -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 (2) 경제법 - 공정거래법, 소비자 보호법
- (3) 사회보장법
- (4) 사회복지 서비스법



1. 빈민법의 제정 이전의 형성 과정

영국은 빈민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수차례의 빈민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 관련 입법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를 계기로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부조인 국민 부조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국민부조나 임의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베버리지가 제시한 사회보장계획은 전후 1945년 총선거에서 압승한 노동당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어 오늘날까지 영국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후 영국사회복지법의 골격이 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새로운 생활보장의 원리와 체계를 내세우고, 국민생활의 재건도상에 잠복하고 있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는 5대 악의 퇴치를 강조하였다.

그 기본적 목적은 국민의 최저생활 (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베버리지 보고서

- 5대 악은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 목적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 강제가입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 전제조건으로는 가족수당제도, 국영의료서비스, 완전고용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1)노동자법

- 1351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Edward) 3세가 제정하였다. 노동자법 (Statute of Laborers)은 1388년 빈민구제 및 통제를 위한 빈민법(구민법,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되어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2)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 헨리 8세가 1536년 제정한 이법(Act for Punishment of Vagabonds and Beggars)은 빈민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였다. 정부의 후원 하에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3) 1562년 장인법 (匠人法, Statute of Artificers)

-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하는 한편, 떠돌이는 중노동에 처하였고, 12~60세 사이의 직업 없는 걸인들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인에게 허용하였다.

4) 빈민구제법 (Poor Relief Act)

- 1576년 빈민에 대한 강제노역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때는 반드시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법제

3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II)

2. 빈민법의 제정과 의의

-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1601년 소위 "구빈민법(舊貧民法, Old Poor Law)" 또는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 Poor Law)'을 제정하였다.
- 1598년 마련된 초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이었다.
-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종전에 산발적이었던 구빈법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법이자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개입의 전조로서 평가되는 그전까지 구빈의 책임은 교구(구빈행정의 기본단위)의 교회가 졌으나 이법의 발효 이후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 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의 원칙이 세워졌다. 이 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동 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은 도제화 시켰다.

※ 엘리자베스빈민법의 빈민 구분

구분	처우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자격있는 빈민)	구빈원에 수용하여 구호, 생활을 부양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자격없는 빈민)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에서의 강제노동, 거부자는 유치장
빈민 아동	강제도제, 입양을 통한 보호

3. 개정 빈민법과 관계법

1) 개정 빈민법 이전

(1) 정주법

- 찰스(Charles) 2세는 빈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1662년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정주법(定住法, Settlement Act of Charles II)을 제정하였다.

(2) 길버트법

- 1782년 길버트 의원이 주도한 길버트법은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동이었으며, 교구연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구빈행정을 시도하였다. 노동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원외구제(outdoor relief) 제도를 창시하여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됨으로써, 구빈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우애조합 장려법

- 1793년 영국에서는 원시적 사회보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장려하는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우애조합법(An Act for the Encouragement and Relief of Friendly Society)이다. 이 법은 우애 조합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여 조합결성을 장려한 법이다.

(4) 스펜햄랜드법

- 1795년 5월 스펜햄랜드의 버크셔 카운티(Berkshire County)는 임금보충방안을 채택하였다. 행정장관은 임금보충방안인 급여수당척도(allowance scale)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제도에 따르면 교구는 빵 가격과 가족 중 아동의 수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임금을 생존수준까지 보충해주도록 하

였다.

2) 개정 빈민법

(1) 개정빈민법의 원칙

- 신빈민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으나 근본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봄
- 신빈민법은 사회의 제도적 빈곤구제법이기는 보다는 사회 통제적 · 잔여적인 빈곤구제법임
 - ① 원외구제의 금지
 -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하고 원칙적인 원내구제 실시
 - ② 열등처우의 원칙 (劣等處遇의 原則,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정상적인 노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구제의 수준을 최하급 극빈 독립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
 - ③ 작업장 테스트 (workhouse test)의 원칙
 - 빈곤 처우의 지나친 다양성과 자격조사에 따른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제적용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배제
 - ④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 피구제자에게 주어지는 구제는 중앙행정기관인 빈민법위원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
- (2) 의의
 - 개정 빈민법은 빈곤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의 시도나 제도적인 빈곤구제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사회 통제적이고 잔여적인 빈곤구제법이었다.

1. 영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1) 대처 정부 이전의 사회복지법(1900~대처정부 이전)

(1) 노령연금법

-1908년 빈곤이 증명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 제도였던 무기여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Act)이 제정되었다.

(2) 국민보험법

-1911년 영국 최초의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이 제정되어 전국 단일 국가보험 형태로 정착하였다. 국민보험법의 제정 이면에는 당시 자유당정권의 사회개혁사상이 반영되었다. 이 법은 사회보험이 처음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영국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측면도 있다.

국민보험은 제 1부 국민건강보험과 제2부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각 로이드 조지(Lloyd George, David)와 처칠(Winston Churchill)이 큰 역할을 하였다. 보험료는 기여제로 노동자와 고용주, 국가가 부담하였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료를 완납한 자에 한하였다.

(3) 실업보험법

-1921년 국민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Act)을 제정하였다. 이법은 당시까지 급여기간 상한이었던 15주를 무시하고 5년간의 시한으로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연장급여(extended benefit)를 시행하기도 했으나, 계속된 불황으로 재정 파탄에 직면하였다.

(4) 실업법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의 구제가 문제가 되자, 영국 정부는 1934년 실업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실업보험제도와 실업부조제도를 새로이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의 시작이었다.

(5) 베버리지보고서(1942)

- 1942년에 베버리지(Beveridge)가 제시한 사회보장계획은 1945년 총선에서 압승한 노동당 정부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어 오늘날까지 영국 사회보장의 근원이 되고 있다.
- 국민의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5대악의 퇴치를 주장
 - :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 5대 악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
-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 가족수당(아동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
- 베버리지보고서의 사회보험의 원칙
 - ①정액급여의 원칙(보편성) :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평등하게 보장
 - ②정액기여의 원칙 : 보험료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각출
 - ③행정책임의 통합 : 사회보장의 모든 행정운동을 통합
 - ④적절성의 원칙(충분성) : 급여의 종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 필요
 - ⑤포괄성의 원칙 : 사회보장의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급여가 이루어져야 함

(6) 가족수당법

- 1945년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s Act)을 제정하였다. 15세 미만의 부양아동, 재학 중인 15~18세의 아동, 15세 이상의 비근로 아동들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과 아동소득공제를 제공하였다.

(7) 국민보험산업재해법

- 1946년 제정된 국민보험산업재해법(National insurance-Industrial injuries-Act)은 균일하게 기여하고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연금을 균일하게 지급받도록 규정하였다.

(8) 국민보건서비스법 (NHS)

- 1948년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은 병원을 국영화하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한 국민보건서비스법을 통해 대부분의 병원을 국유화하였고, 의료의 사회화를 이룩하였다.

(9) 국민부조법

- 빈민법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은 1948년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에 의해서 이다. 국민부조법의 제정으로 빈민법은 350년 만에 해체되고, 국가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이라는 이념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2) 대처 정부 이후의 사회복지법

- (1) 1979년 장기집권에 성공한 대처 정부는 영국병의 원인이 거대한 사회보장제도에 있다고 보고 경제성장을 제1의 국가정책으로 삼고 이를 위해 1986년 사회보장법(1986 Social Security Act)을 제정.

-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사회보장급여 부문에도 상당한 개혁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소득보장제도는 보충급여(소득보조), 가족공제(family credit), 주택급여 등으로 이루어 짐.

(2) 사회보장의 기여와 급여에 관한 법

- 대처 수상은 1992년 이 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Benefits Act)을 제정.
- 이 법에 따르면 16세 이상 65세(여자는 60세) 미만의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이 제도가 적용되어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발생.

(3) 사회보장 관리법

- 1992년에는 사회보장관리법(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t)을 제정하여 과부급여, 급여지급, 산업재해급여, 장애근로수당 등에 관한 사회보장을 관리.

(4) 사회보장 기여법

- 1999년에 사회보장기여법(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ct) 제정.
- 이 법에 따라 국가보험 기여금, 국민보험기금, 질병급여, 출산급여 등과 관련된 기능을 국무장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나 재무장관으로 이전시키도록 규정.

(5) 복지개혁과 연금법

- 1999년 복지개혁과 연금법(Welfare Reform and Pensions Act)이 제정.
- 연금과 사회보장에 관한 개혁입법으로 스테이크홀더 연금제도(stakeholder pension scheme,

사회복지법제

4주차 1차시 - 근대적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I)

관리연금제도)를 도입.

- 관리연금제도(Stakeholder Pension Schem)
- 기업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기업 연금으로 전환이 어려운 피용자나 자영업자를 위해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운영되는 제도.
- 개인 계정은 유지되지만 마케팅이나 징수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기업 연금과 성격이 비슷하며,
- 개인이 직업을 이동할 시 연금수급의 불리한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1. 독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1) 독일 사회복지법의 역사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임
- 독일의 사회복지법은 명시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수발보험이라는 세 가지 법 영역에서 생성되고 발전
- 비스마르크(Bismarck)시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이후 체계화되기 시작
- 1950년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오던 독일 경제가 1960년대 중반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자, 기민당과 기사당의 연립정권인 사민당은 1967년 경제안정 및 성장 촉진법을 제정하고, 1969년 연금보험법을 개정.
- 1990년 독일이 재통일됨으로써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에도 효력을 미치기 시작.

2) 독일 사회보장법의 발달과정

※ 비스마르크 시대에 제정된 법률 : 질병보험, 폐질 및 노령보험법, 재해보험

(1) 주소지보호법 (1870)

- 이 법에 따라 빈곤층에 대한 주소지 보호의 원칙이 정해지고 주별로 구빈조합을 창설.

(2) 사회주의자 탄압법 (1878)

- 비스마르크는 1878년 사회주의자 탄압법(Sozialistengesetz)을 제정.
- 사회주의자탄압법 자체는 사회주의운동 가담자들의 진압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지만,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입법의 계기로 작용

(3) 질병보험법 (1883)

- 근로자의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사회보험.
-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무료치료와 질병수당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제도.
-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볼 수 있는 질병보험법은 광산, 공장, 철도, 수공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저소득 노동자를 강제 적용 대상.

(4) 재해보험법(산재보험법) (1884)

-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의무적인 가입 대상.
- 업무상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제도를 확립.

(5) 폐질 및 노령보험법 (1889)

- 연금 재원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약간의 보조금으로 충당.
- 1883 질병보험법(의료) → 1884 재해보험법(산재) → 1889 폐질 및 노령보험법(연금)

사회복지법제

4주차 2차시 - 근대적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II)

(6) 제국보험법 (1911)

-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통합하여 제국보험법을 제정.
-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
 : 질병보험의 경우 가입 대상이 농촌피고용자, 가사보조원, 가내공업 종사자까지 확대되었고, 폐질 및 노령보험의 경우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태의 부가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과부 및 고아를 위한 유족보험이 개발.

(7) 공적보험법 (1924)

- 기존의 각종 빈민구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단순화시키고 통일.
-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던 종전의 빈민구호라는 용어 대신 공적보호라는 표현 사용.
- 소액연금수령자, 산재피해자, 구호가 필요한 미성년자까지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추가

(8)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 (1934), 수공업자보험법 (1938)

- 기존의 폐질보험, 직원보험 및 광업조합보험법을 연금보험법이라는 명칭으로 통합.
- 이에 따라 제국보험도 질병보험, 재해보험 및 연금보험을 의미하게 됨.
- 수공업자 보험법으로 수공업자들이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됨.
- 이전에는 독일의 사회보험은 피고용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경영자에게도 보험가입의 길이 열려 전 국민보험으로 발전.

(9) 사회법원법 (1953), 아동수당법 (1954), 연금법 개정 (1957), 연방사회부조법

- 사회법원법에 따라 사회보장문제를 담당하는 법원이 설립.
- 1954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아동수당제도가 시행.
- 1957년 연금법이 개정되어 연금액이 임금상승과 연계. 연금지급수준을 임금인상과 연계시키는 슬라이드제를 채택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금의 재정도 비스마르크 이후 기본적인 재정방식이었던 적립방식을 폐지하고 부과방식을 채택.
 - 슬라이드제 :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산하는 제도
 -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연금보험에서 적용되는 재정방식은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분류.
-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기여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가입자에게 급여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의 적립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재정방식.
- 부과방식에서는 가입자가 기여하는 보험료는 현재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재원으로 활용.

(10) 사회법전 (1970)

- 기존에 제국보험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회보장법률의 체계화를 위해 사회법전을 편찬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관련된 법들을 사회법전에 포함.
- 사회법전은 공적인 사회적 급여에 관련된 모든 개별법을 포괄하고 있으며, 법조항 개정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보완.

(11) 질병보험구조개혁법, 연금개혁법, 통화 · 경제 · 사회통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

- ① 질병보험구조개혁법 (1988년 제정) :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기 위한 법
- ② 연금개혁법 (1989년 제정) :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
- ③ 통화 · 경제 · 사회통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 : 1990년 통일 전에 체결된 통화 · 경제 · 사회통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에서 동독은 서독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 사회보장의 원칙,

취업촉진법의 재규정, 사회보조체계 등은 그대로 도입하기로 확정.
따라서 구서독 사회보장법규는 구동독 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됨.

(12) 수발보험법 (1994)

- 수발보험의 가입 대상자는 법정 질병보험의 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였고, 수발보험에 별 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보험 가입과 동시에 수발보험 가입자가 됨.
- 1995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납부를 시작으로 도입된 사회적 간병 및 보호보험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유지가 자신의 신체적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간병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호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존의 의료보험과는 다른 하나의 사회보험으로 대처.

3) 독일 사회보장법의 내용

(1)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 질병보험법(1983)

(2)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명시적 사회법전 존재

(3) 대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적용

: 질병보험법은 광산, 공장, 철도, 수공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저소득 노동자에 강제적용

(4)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제도를 확립

: 재해보험법(산재보험법) (1884), 업무상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 규정

(5) 사회보장법률을 체계화

: 제국보험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회보장법률을 체계화시키기 위하여 사회법전을 편찬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관련된 법들을 사회법전에 포함

2.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1) 근대 이전의 형성과정

(1) 삼국시대

- 진대법(194년): 고구려 고국천왕 때 춘궁에 관곡을 평민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추수기에 반납하게 한 제도
- 창제: 삼국시대 공통의 구제제도로 부락별로 곡창을 설치하고, 질병, 풍수해, 전란 시에 양곡을 방출하는 제도.
- 사궁구휼 :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을 구제하는 제도로 군주들이 친히 방문하여 위로.

(2) 고려시대

① 고려시대의 구제제도

- 고려시대에는 초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의 진휼사업(賑恤事業)이 행하여졌다. 진휼기관인 의창(義倉)을 설치하고 은면지제(恩免之制)·재면지제(災免之制)·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수한역려진대지제(水旱疫癘賑貸之制) 등의 방법으로 제도 시행.
- 이 제도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빈민구제

② 상설구빈기관

- 의창(혹창, 986년): 평상시에 관곡을 비축하였다가 비상시에 지급하는 제도
- 상평창(993년)은 물가조절기능과 구빈, 두 가지 기능을 담당
- 동서대비원은 환자의 치료와 빈민구제를 담당 현대의 병원과 복지시설을 겸한
구료기관
- 해민국(1112년): 국립의료기관으로 서민을 위한 의료기관
- 제위보: 일정한 재화를 원금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대부로 활용하여 생기는 이자로 기관
을 운용하고 아울러 구제사업도 실시
- 유비창: 재난으로 인한 빈민구제와 물가조절 등 의창 과 상평창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

(3) 조선시대

- 조선시대는 빈민의 구제는 왕의 책임이었다. 그리고 신속한 구제를 중시하였으며 일차적인 구빈
행정의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고 중앙정부는 지도 감독의 역할 수행.
-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휼제도가 있음.
: 구휼제도에는 사궁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시식사업, 진휼 또는 진대사업, 조직 또는 방곡
사업, 고조, 견감, 원납, 인보상조, 구휼방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는 상부상조의 제도인계와
향약이 발달.

• 대표적 구제제도

- 예방적 성격(사전적 성격) : 상평창, 의창, 사창
- 사후적 성격(빈곤구제정책) : 구휼청, 해민국, 활인서, 제생원, 환곡제도 등

2) 근대 한국의 사회복지법
(1) 일제강점기
① 조선구호령의 근거와 배경

- 군사물자지원과 징병 등에 이용하려는 목적에 의해 일본의 구호법을 한국에 확대 실시
- 정치적 목적과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시혜적인 사회복지법

② 조선구호령(1944)

- 65세 이상 노쇠자, 13세 이하 유아, 임신후, 불구·폐질·질병·상병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가 대상
- 생활부조, 생업부조, 의료부조, 조산부조, 장제부조가 있음.
- 생활보호법(1961)의 모태
-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법
- 신청주의, 신청자에게 자산조사 실시

(2) 미군정기

- ① 후생국보(1946) 제정:구호준칙으로 후생국보 제3호, 후생국보 3A호, 후생국보 3C호 제정

후생국보 제3호	후생국보 3A호	후생국보 3C호
공공구호대상자 ·공공부호를 요하는 65세 이상 된 자 ·6세 이하의 부양할 아동을 가진 여자 ·13세 미만의 아동 ·불치병으로 신음하는 자 ·분만 시 원조를 요구하는 자 ·정신적·육체적 결함이 있는 자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	조선구호령과 유사, 공공부조

② 군정법령 제112조(1946) : 아동노동법규

(3)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제헌헌법(1948.7.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1949), 군사원호법(1950), 근로기준법(1953) 등

(4) 1960년대의 사회복지

-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 헌법): 헌법의 생존권 규정을 개정,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
- 공무원연금법제정(1960): 우리나라 사회보험관련법 중 첫 번째 입법
- 갱생보호법(1961.9.30), 군사원호보상법(1961.11.1)
- 생활보호법(1961.12.30):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최초로 공공부조의 실정법을 제정
- 아동복지법(1961.12.30 제정 → 1981.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 재해구호법(1962), 군인연금법(1963.1.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11.5)
- 의료보험법(1963.12.16): 대상자의 가입에 임의성을 인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 의의 상실

(5) 1970년대의 사회복지

•1970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1973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76 의료보험법의 개정(강제적용) → 1977 의료보호법제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

(6) 1980년대의 사회복지

•1980 사회복지사업기금법 → 1981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의 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 1983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생활보호법의 개정 → 1984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86 국민연금법의 제정, 최저임금법의 제정 → 1986 보호관찰법 → 1989 모자복지법 → 1989 전 국민의료보험 체제 확립

(7) 1990년대의 사회복지

- 사회보장기본법(1995): 사회복지의 법적 뼈대를 비로소 갖추게 되어 의의가 큼
- 사회복지사업법(1992.12.8 전문개정):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고용보험법 제정(1993.12.27):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지만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가장 빠르게 확산된 법.

사회복지법제

4주차 2차시 - 근대적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I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9.7 제정, 2000.10.1 시행): 생계, 주거, 의료, 해상, 장제, 자활급여 등이 있으며, 수급자의 권리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개정(1990.2.8 전면개정), 국민건강보험 법 제정(1999. 2.8 제정, 공포)

(8) 2000년대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2000.1.12), 정신 보건법 개정(2000.1.12)
- 아동복지법 전면개정(2000.1.12):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변경,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긴급전화 설치 및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법 개정(2001.5.24),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2002.1.19)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3.12.29):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해야 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2005.12.23 제정): 일정기간만 효력이 발생하는 한시법이었으나 2009년 5월 28일 영속법으로 개정
- 기초노령연금법제정(2007.4.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2007.4.27),한부모가족지원법제정(2007.10.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3.21), 노인복지법 개정(2010.2.2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



1.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의 체계란, 사회복지법이 다른 영역의 법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정적 기준이나 지도 원리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즉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성

1) 법의 일반적 체계

(1) 자연법 (自然法, natural law)

- 자연법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을 말한다.
- 즉 자연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초실정적인 법규범이다.
- 자연법은 우주의 존재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으로서, 정의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2) 실정법 (positive law)

- 실정법은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발전되어왔다. 경험적,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실정법에 해당한다. 이는 인간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법이다. 따라서 실정법은 국가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변천·발전하였다. 19세기 초 이래 법사상적 관심은 실정법으로 집중되고, 따라서 법실증주의는 자연법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실정법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뉜다.

☞ 법실증주의 : 법의 이론이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법 자체만을 형식적,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자연법사상과 대립된다. 결국 실정법주의는 실정법이 완전무결한 체계를 갖추었다는 전제와 확신 하에 법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① 국내법

- 국내법(國內法, municipal law)이란, 한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어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일정한 절차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 국내법은 사인(私人)과 사인 간, 사인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간(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공공단체 간, 공공단체와 공공단체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한 국가의 국민과 외국인의 생활관계, 즉涉外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은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인데, 이는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에 속한다.

※법률관계라는 것은 법이 규율하는 관계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 갑에게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고, 을에게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즉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이 경우 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어느 때에 대금을 지급하는가, 언제 어디서 물건을 인도할 것인가 등은 모두 갑과 을의 의사의 합치로 결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든가, 팔든지 갑과 을의 자유이다. 그런데 공법에서의 법률관계는 사인이 자유로이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② 국제법

- 국제법(國際法, International law)은 국제단체에 의하여 인정되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하여지는 법을 말한다. 국내법에 비하여 국제법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력이 약하고, 그의 입법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입법기관이나 입법절차가 불완전하다.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은 지역적인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 사회복지법과 국가간에 적용되는 국제 사회복지법으로 나뉜다.
- 사회복지제도의 내용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다.
- 사회복지법은 주로 국내법적인 성격을 띠지만, 사회보장협약,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적 권고, 국제선언, 그리고 1964년 제정된 유럽사회보장법전의 내용 등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 사회복지법은 성문법에 속한다. 즉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의 실정법 가운데, 사회복지법은 주로 제도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 공포된 제정법(성문법)에 속한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1)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하는 상태(welfare = well + fare)

(2) 사회복지법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된 제반 법규.

2) 형식적 의미(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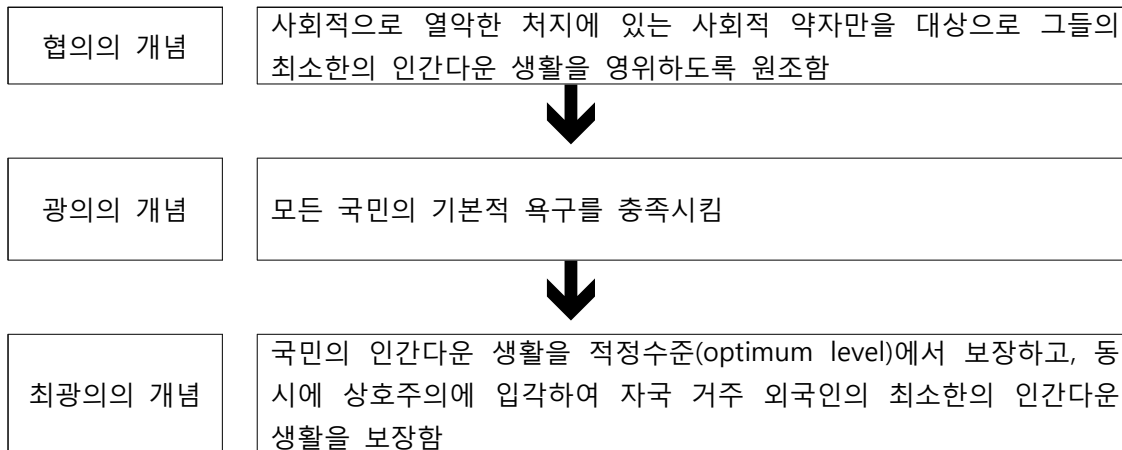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의 명칭을 가진 형식적 사회법전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적 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와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법률.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관련 복지제도)

3) 실질적 의미(광의)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연대, 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의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법규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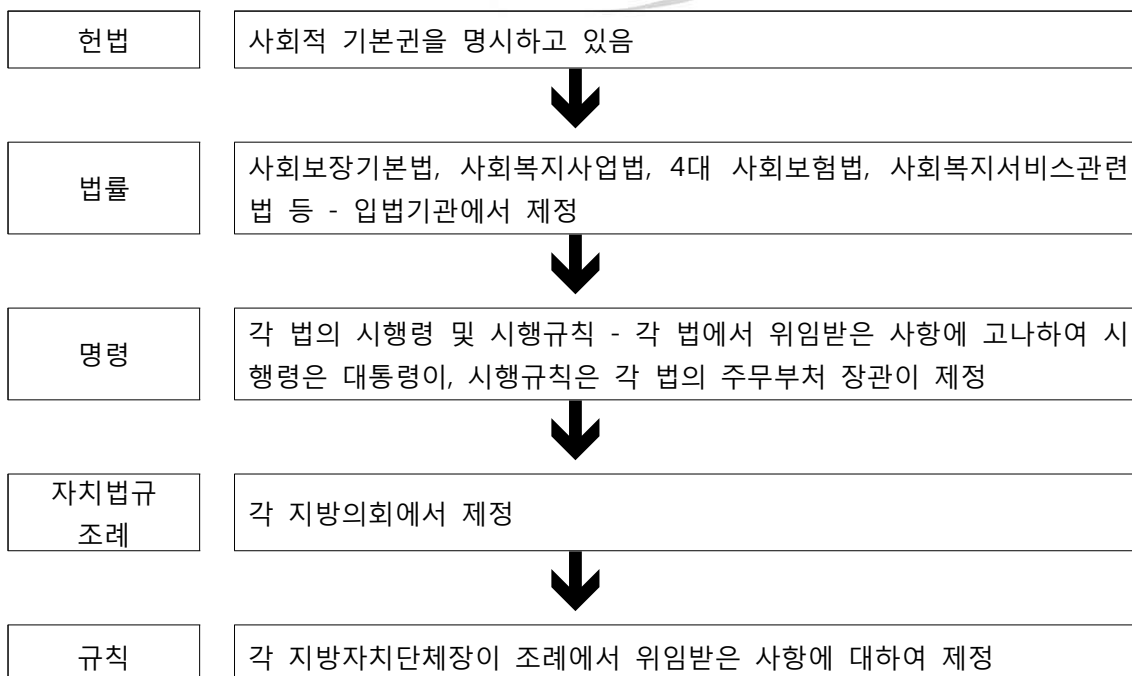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 수직적 관점의 사회복지법의 체계

입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공포된 법.

- 1) 헌법: 국가 최고의 기본법, 생존권적 기본권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근거
- 2) 법률: 국회에서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 3)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이며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이고 시행규칙은 보통 총리나 장관의 명령을 말함.
- 4)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든 것임.
- 5)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사회복지법제

5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분류

1. 사회복지법의 분류

* 사회복지법의 분류

사회복지법은 하나의 법전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라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사회복지 관련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복지법은 내용적으로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및 사회복지관련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관련법

구 분	분류	해당법령	비고
사회복지법 <사회보장 기본법> 에 따른 분류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군인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정신보건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의료급여법*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은 공공부조에 속한다. 이 법률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17법이다.
	사회복지 관련법	재해구호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고령자고용촉진법 / 청소년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기타	이 외에도 사회복지 관련법들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다수 포함된다.

☞ 헌법상의 사회복지법원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전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지방자치제의 이해

1. 자치법규

(1) 자치법규 (조례, 규칙)

• 헌법 제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규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 또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자치에 관한 규칙인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주민자치나 단체자치로 나뉜다.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주민들의 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반면 단체자치는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제

5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분류

1) 조례의 의의 및 특성

① 조례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지방 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법률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 15조)

② 조례의 특성

- 위계적이고,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법 제 17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자적인 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 않는 사회복지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조례는 내용상 포괄성을 갖는다. 조례는 특정 분야에 한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조례도 제정하고 있다.

- 조례는 법질서·유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일관성을 기하고 있다.

- 조례는 지역제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③ 사회복지조례

-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이를 위하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조례는 자치입법권
2. 조례는 살아있는 법
3. 조례는 법률 보완
4. 조례는 위임조례와 직권조례
5. 조례의 한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 가능하고 그 효력이 지역 내로 한정되어 있음

2) 규칙의 의의 및 특성

- 규칙(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이다(지방자치법 제 23조). 따라서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다. 일반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즉 조례시행 규칙 또는 조례운영규칙을 정한다.

3) 조례·규칙의 심의·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둔다.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지방의회

- 지방의회는 조례의 의결 및 개폐뿐만 아니라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2)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①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 8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등의 사무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제정권을 갖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설립하고 그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기본권과 사회복지법

1.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의의

1) 기본권이란?

- 국민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반면에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생래적 자연권을 말한다.
- 기본권은 천부인권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되는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기본권의 특질에는 보편성, 전(前)국가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 등이 있다.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의 보장에 대해 알아본다.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① 주관적 공권

- 이는 기본권을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로서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② 자연권설

-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권리라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이 자연권인가, 실정권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갈려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자연권설에 기초하고 있다. 자연권은 생태적 권리, 천부인권을 말하며, 실정권은 헌법에 규정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된다고 보는 학설이다.

③ 기본권의 이중성

- 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대국가적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 유지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데, 이러한 면을 이중성이라 한다.

3) 기본권의 제한

- 현대 국가에서는 비상시의 원활한 대처와 위기극복을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등에 따라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기본권의 종류

1) 포괄적 기본권

-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 ② 행복추구권
- ③ 평등권

2)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

- 자유권적 기본권은 흔히 자유권이라 하며,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유래했다.
- 계약의 자유원리, 소유권 절대의 원리, 과실책임의 원리, 사적자치의 원칙 등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특징에 해당된다.

사회복지법제

6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I)

-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침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할 방어적 • 소극적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체의 자유

② 사회경제적 자유권

-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③ 정신적 자유권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3)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사회권적 기본권(즉, 사회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사회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등이 있다.
- 생존권적 기본권은 복지권을 말하므로, 여기에서는 사회권을 살핍으로써 생존권과 복지권을 함께 알아본다.

①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의

-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사회권적 기본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생존권)이라고도 한다.

② 최초의 사회권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인 인간존중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④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

-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에 대한 권리, 근로3권, 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복지권 중 시민권은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권은 공민권, 참정권, 사회(생존) 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권은 시민권중 사회(생존)권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제

6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I)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의 관계

구분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사상적 기초	• 개인주의, 자유주의 • 형식적 • 시민적 법치주의 • 자유방임국가, 야경국가	• 단체주의 • 실질적 • 사회적 법치주의 • 복지국가 실현
권리의 성질	소극적, 방어적, 자연권성인 천부인 권상의 권리(초국가적 인간의 권리)	적극적 권리 (실정권적 국민의 권리)
권리의 효력	• 모든 국가기관을 직접 구속 • 권리제한적 법률유보*	• 입법권만을 구속 • 권리형성적 법률유보
권리의 내용	자유방임을 기초로, 국가로부터의 침해나 간섭을 배제(소극적 권리)	국가에 대해 급부나 배려를 요구 (적극적 권리)

*법률유보 :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행정법에서는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내용임.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사회보장수급권

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란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을 말하는 것으로, 질병 • 노령 • 실직 등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위치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생존권, 사회권 조항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제 9조에 의하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명시된 법적 용어이다. 이는 외국의 학자들이나 미국의 복지권 운동에 의해 복지권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관련복지급여청구권으로 구성되는 실체적 권리로서 그 법적 권리를 인정함

(2) 복지권

•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내용상 기본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그리고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으로 구분된다.

• 이 가운데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아래 주로 생존권의 한 영역으로 분석된다.

• 기본권 (fundamental rights) :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 복지권(welfare right: right to welfare) : 헌법상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권리. 즉 복지권이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3)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대

• 복지권의 범위 확대 : 요보호자 → 전국민 (국내 체류 유자격 외국인 포함)

• 복지권은 그 대상이 요보호대상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그리고 국내 체류 유자격 외국인들에게까지

사회복지법제

6주차 1차시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I)

상호주의와 인도주의에 입각해 확대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권이 공민권보다 오히려 대상 범위가 더 넓게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3. 기본권의 헌법상의 규정

1) 바이마르헌법(Weimarer Verfassung)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은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된 이래 세계 각국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바이마르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헌법상 국가는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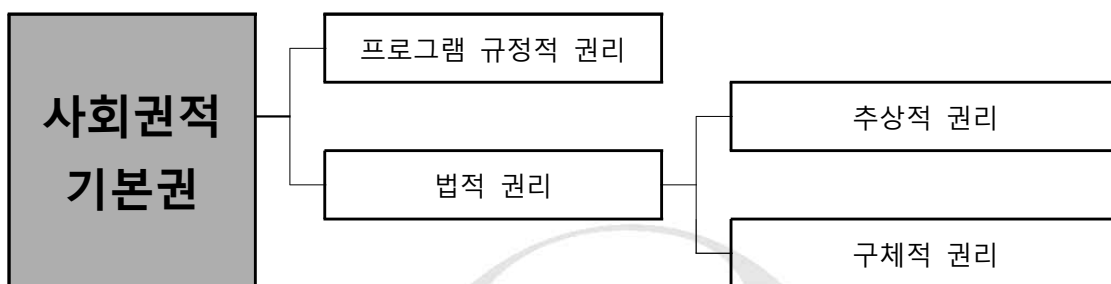
조항	핵심	내용
헌법 제10조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 규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 제1항	생존권 보장의 기본원칙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2항 이하	복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119조 제2항	소득분배 관련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라고 규정

*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구조

1.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사회권적 기본권의 분류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설(program 規定說, 또는 입법방침설)과 법적 권리설(法的 權利說)로 나누어진다.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抽象的 權利說)과 구체적 권리설(具體的 權利說)로 세분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크게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와 법적 권리로 나뉘고, 법적 권리는 다시 추상적 권리, 구체적 권리로 세분된다.



2)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

①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확대

-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 즉 입법 방침설에 따르면,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하나의 정책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이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가보호에 관한 헌법규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한 규정 이 아니라, 그에 관한 법의 제정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강령규정으로서,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 침을 지시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권만을 구속하고, 행정권과 사법 권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그 실시는 국가의 자유재량이며,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속한다.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국가는 입법을 할 정치적, 도의 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다.

② 법적 권리

- 법적 권리설은, 사회복지의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은 법적인 권리로서 개개 국민은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이다

법적 권리설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구속한다고 본다. 법 적 권리는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어진다.

① 추상적 권리

- 추상적 권리설은 국민은 국가에 대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추상적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추상적 의무를 진다고 보는 학설이다.
-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직접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 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입법과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추상적 권리를 가진다.
- 우리나라 생존권에 대한 권리로서 생존권의 보호 의무는 국가의 법적 의무로 이해하지만 구체적, 현실적인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아니다.

사회복지법제

6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II)

㉓ 구체적 권리

- 구체적 권리설은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헌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은 헌법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국가 기관에 직접 사회권 보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학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 고나한 입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 현재의 다수설은 모든 헌법 규범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재판규범으로 보는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이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구체적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자유권처럼 직접 효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입법에 의하여 완전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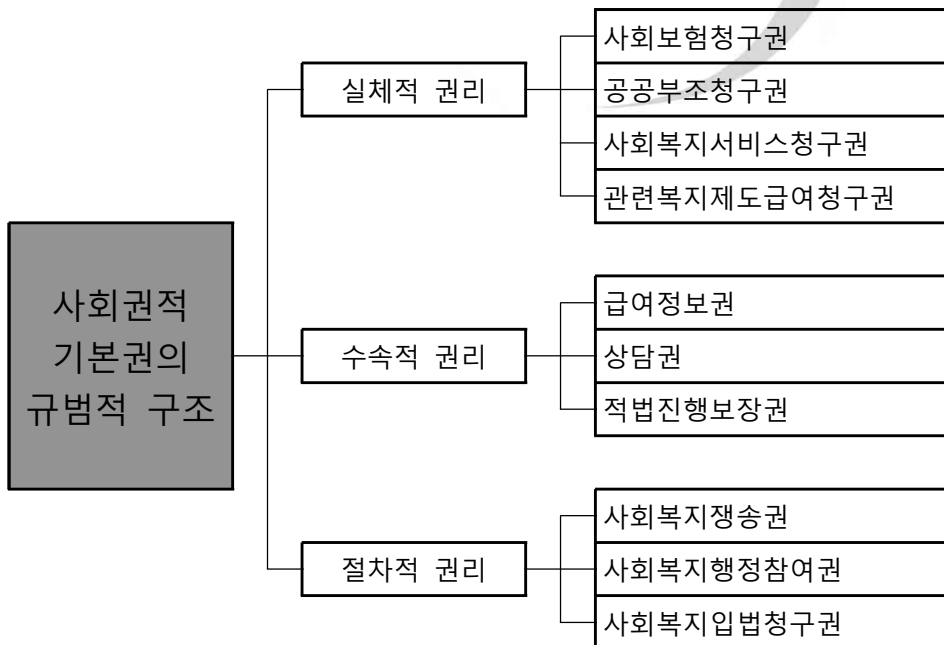
3) 복지권의 성격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에서 복지권의 성격은 구체성, 적극성, 권리의 강도의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체성	적극성	권리의 강도	법적 권리
프로그램규정적 권리	매우 약함	매우 미약	매우 미약	아님
추상적 권리	약함	미약	미약	법적 권리
구체적 권리	매우 강함	매우 강함	매우 강함	법적 권리

2. 사회복지 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성됨.



사회복지법제

6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II)

1) 실체적 권리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이 해당 법률에 의해 현실적인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복지급여청구권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은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원조달, 전다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청구권의 구성

- ① 사회보험 청구권 : 사회보험법에 의한 연금이나 요양급여, 실업급여,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공공부조청구권 : 공공부조법에 의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④ 관련복지제도급여청구권 : 관련복지제도에 의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속적 권리

-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급여정보권, 상담권, 적법진행보장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절차적 권리

-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급여정보권, 상담권, 적법진행보장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① 복지 급여쟁송권 : 복지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 ② 복지행정참여권 : 복지행정 과정에 복지권자나 국민들이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수급자격이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이루어지는 자산조사나 상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남용을 막고 복지행정이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복지입법청구권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사회복지 수급권의 행사와 권리구제

1. 사회복지 수급권

1) 사회복지 수급권의 의의

- 사회복지법 실행과정에서 구현하려는 권리의 핵심으로 사회복지법상의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과거에는 단순한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이나 구빈의 관점에서의 시혜적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현대에는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법적 권리로 인정.
- 금전적 급여를 통한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보호, 비금전적 급여를 통한 재활,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청구권을 통칭

2) 사회복지 급여의 신청

- 사회복지 수급권은 신청해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

- 사회복지 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4) 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 및 포기

- 사회복지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회복지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5)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복지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특징

1) 취약한 권리성

- 오랫동안 사회복지수급권은 기본권의 성격상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로 인정되어온 것이 통설이었다. 현재는 법적 권리설로 차츰 인정되고 있으나 학자마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로 이견이 있다. 재산권처럼 구체적 권리설로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기본권과 달리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권리성이 약하다.

2) 너무 많은 종류의 복지급여

- 현금급여나 현물급여뿐만 아니라 시설수용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상담서비스와 같은 복지서비스가 있다.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는 모든 내용을 법률조항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준화시켜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국민들에게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하기 때문에 개별 사례 위주의 복잡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복지권은 취약하기 마련이다.

3) 기본권으로 인식 취약

- 복지수혜 근거인 빈곤을 수혜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수급권은 기본권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은 국민 다수가 향유하는 권리라기보다는

사회복지법제

6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II)

사회 내에 소수 극빈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로부터 복지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3.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와 구제

사회복지 수급권이 갖는 특징인 권리실현의 취약성은 수급자의 권리보장을 어렵게 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권리보호를 위한 원칙과 침해당한 권리의 구제를 규정하고 있다.

1) 권리보호

(1) 처분·압류·상계의 금지

- 일신 전속권인 공법상의 권리는 양도나 담보제공·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12조, 국민연금법 58조, 국민건강보험법 54조, 고용보험법 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조, 국민기초생활법 35~36조)
-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키는 상계도 금지·제한된다.

일신전속권

특정 인격체에 전속되어 있어서 권리의 향유와 행사가 권리자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이에겐 인격권, 가족권, 부양청구권 및 친권 등이 있다.

(2)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수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4조)
- 일정한 사유로 수급자에게 수급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때에도 반환명령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7조 1항 단서)

(3)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 금지

- 사회복지급여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여 조세나 공과금의 부과는 금지된다.(국민연금법 60조)
-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공과금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법 56조)

2)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의의

-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권리인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침해로부터의 구제는 마땅한 제도
-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수급자격, 급여, 보험료,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의 경우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

(2) 권리구제의 유형

-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이의신청과 심사) 처분을 한 당해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
 (재심사) 처분 기관의 상급기관에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로 행정심판의 성격
- 법적 쟁송

사회복지법제

6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의 기본 권리와 행사(II)

- ① 행정소송 : 각종 심사 도는 재심사청구에서 결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 국민연금법 : 전심절차 전제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임의적 전치 주의)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불복할 경우
 - 대부분의 개별 사회복지법은 전심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일반적
- ② 민사소송 : 사회복지급여의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 발생 주체인 제 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권 행사
- ③ 헌법 소원 :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3) 권리구제의 절차

- 전심절차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행정소송에 앞서 행해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로 사회적 약자의 신속한 구제와 재판 남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임

(전심절차의 유형)

- A. 이의신청->심사청구 : 일반적 유형
- B. 두 번의 이의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C.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 사회복지법상에 규정되어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 신청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A(1차 이의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
- B(2차이의신청) : A의 결정에 이의 있을 경우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② 국민연금법

- A(심사청구) : 가입자의 자격, 급여에 관해 공단의 처분에 이의 있는 경우 공단에 심사 청구
- B(재심사청구) : A에 불복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

③ 국민건강보험법

- A(이의신청) : 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급여 등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 B(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

④ 고용보험법

- A(심사청구) :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B(재심사청구) :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A(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 B(재심사청구) :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의한 재결

*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1. 사회복지의 법률관계와 권리주체

1) 사회복지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의 법률관계는 사회복지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객체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여러 학설이 있으나,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주체설에 따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주체는 주로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통해 설명한다. 즉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운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법률관계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주체에 관한 논의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사회 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의 주체를 크게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의 주체

- 공적 사회복지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사적 사회복지 주체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등

3) 공법과 사법

- 공법 :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사법 : 사인(私人)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2.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 국민이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계속적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형식적으로는 헌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를 의미한다.

- 이에 대한 규정으로는,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 기본권은 국민 개개인이 국가 내에서 가지는 원칙적인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된다.

2) 외국인

-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외국국적을 가진 자이며 무국적자까지 포함한다.

- 현행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헌법 제6조에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적용을 확대해 가는 추세이고, 근로3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현재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및 입국의 자유 등이 있다.

3) 법인

- 우리나라 헌법에서 법인에 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법인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자연인을 위한 목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질에 따라 특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견해(헌재 1991.6.30. 90헌바56 등)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의 관련 법규

<사회복지 기본법>

제 16조 (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주의)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 (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신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제 18조 임원

제 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 20조 인원의 보충

제 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제 22조 임원의 해임명령

제 23조 재산 등

제 24조 재산취득보고

제 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제 27조 잔여재산의 처리

제 28조 수익사업

제 30조 합병

제 31조 동일명칭 사용금지

제 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 33조 사회복지협의회

* 공적 주체와 법률관계

1.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의의

-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관계이다. 공적 사회복지 주체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공적 사회복지 주체의 종류

사회복지법제

7주차 1차시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Ⅰ)

1) 국가

(1) 국가의 개념과 역할

-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기초로 통치 권력에 의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말한다.
- 국가는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행정 조직을 통해 행사된다.
 - 그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며, 이 행정 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2) 정부의 사회복지조직

-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전담조직과 겸무조직, 그리고 일반조직의 하위부서로 구분된다.
- 사회복지 행정의 대부분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총괄적인 관장을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도 전담행정조직의 기능을 담당한다. 광의의 범위로 보면 국토해양부도 주택복지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다.
- 4대 사회보험의 경우는 각 제도별로 분리된 관리운영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연금보험(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군인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등의 행정체계가 보험의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조직의 내용]

구 분			조 직	
공공 사회 복지 행정 조 직	중앙정부	복지전담조직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지겸무조직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등	
	광역자치단체	복지전담조직	복지국, 여성정책관 등	
		복지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등	
	기초자치단체	복지전담조직	주민생활국, 보건소 등	
		복지담당부서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등	
	민간복지 행정조직		전국 단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개별 단위	법인, 시설 단위

2)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부여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구별된다.
- 일정한 구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인 점에서 다른 일반 공법인과 구별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公

사회복지법제

7주차 1차시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I)

法人)이다. -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 단체조합)가 있다.

◎지방자치 단체조합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안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립하는 법인인 조합을 말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地方自治法 149).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로 대별된다
-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시 · 군 ·자치구)로 나뉜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부행정기관(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하부행정기구)이 있다.
- 학교는 교육기관일 뿐.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는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라 볼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역할의 증대

- 지방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한다.
- 최근 들어 일부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 민간사회복지 주체

1. 법인의 개념

1) 법인의 의의

- 법인(法人, artificial person, juridical person, corporation) :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또한 일정한 목적 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의 집합체에 대하여 법인격, 즉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단체로는 사단과 재단이 있다.

※ 사단 :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단체자체가 그 주체가 됨.

※ 재단 : 재산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그 목적을 영위 하는 경우 법인격을 가진 결합된 재산의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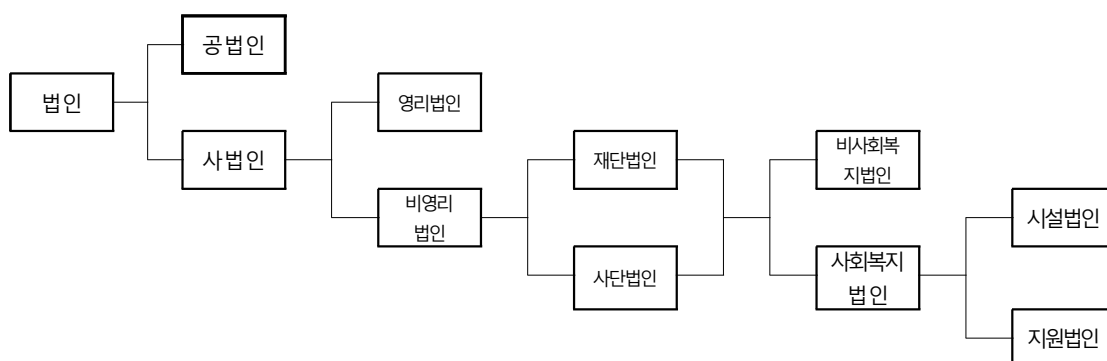
2) 법인의 특징

- 일정한 단체가 법률에 의해 인격을 승인받아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 ①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 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한다.
- ②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있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
- ③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이라는 점이다.

2. 법인의 종류

- 법인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분 되고, 사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법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상당수의 법인이 민법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 다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격을 변경하였다.



1) 공법인(公法人)

-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을 공법인(公法人)이라 한다.
- 공법인은 사법인과는 달리 보통 그 목적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권이 부여되고, 여러 특혜가 인정되며, 또한 국가의 특별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 공법인은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최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공법인이다.

2) 사법인(私法人)

- 사법인은 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이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그리고 상법상의 영리법인이 대표적이며,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단체의 강제적 권력 작용이 가해지지 않는 법인을 가리킨다. 한국이웃사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법인 이다.

3) 영리법인(營利法人)

-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단법인만이 리법인이 될 수 있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4)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공익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며
-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으며,
-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원(정회원)이나 또는 재단이나에 따라 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뉜다.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인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지만 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 비영리사업과 아울러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상관없다.
- 이 경우의 수익이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유료노인 복지시설인 실버사업과 같은 이용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이 될 수 있다.

5) 사단법인(社團法人, 社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社團]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른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법인이다.
-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상사회사, 商事會社), 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 영리사단 법인을 말한다.
-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재단법인(財團法人, 財團)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적으로 영하기 위해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한 재산이라는 실체[財團]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다.
-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비영리법인만이 인정된다. (예 : 홀트 아동복지, 한국 복지재단, 한민족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화

사회복지법제

7주차 2차시 -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II)

한 것 등 다양함

-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로 성립하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자는 일정한 산을 출연행위와 정관을 작성해야 함(민법 43조)

7)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예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함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16개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부랑인보호, 직업보호,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사회복지법인제도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법인과 지원 법인으로 구분됨
- 시설법인은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
- 지원법인이란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2)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장)'에서 규정
- 이 외의 경우는 '민법(제32조~제97조)'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령의 적용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법률의 적용도 받게 됨.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의 순위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특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순
- 각종 세법에 사회복지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세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금지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21조)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법률도 준수하여야 함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1) 재산의 출연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함
- 따라서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의 필수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출연하여야 함

① 재산의 구분

-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됨
-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② 재산의 규모

- 법인의 기본재산규모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은 개별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종류별 규모 이상의 시설(건물)과 부지를 갖추어야 함
- 원칙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함.
- 지원법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기본재산 규모는 법인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의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2) 정관의 작성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근본규범이 되는 정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음
-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 그러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일단 정관에 규정되면 그 효력의 차이가 없으며, 그 변경절차도 동일함

3) 설립허가

- 법인설립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함)을 거쳐 시도지사(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함
- 시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 법인의 자산규모, 정관의 내용, 설립절차의 적법성 등을 심사·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됨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허가는 재량행위로서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사회복지법제

9주차 1차시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I)

*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

1. 사회복지사의 의의

-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다.
- 사회복지사는 문제나 욕구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평가·환류하고, 개별적·집단적 상담 등을 통하여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사회복지사의 자격

1)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요보호대상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됨
-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는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는 국가시험으로 관리·운영함(사회복지사업법 11조 3항)

2) 사회복지사의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서로 다르게 수립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2003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 이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음
 - “사회복지 사업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격상
 -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이하는 대학 이상의 교육제도를 통한 관련 교과목 이수중심으로 수정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시험과목이 기존의 필수과목 6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 총 8과목에서 2005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필수과목 8과목으로 변경
- 변경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음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법제론)

(2)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의 전제요건이 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

회복지관련 교과목은 다음과 같음

필수과목 (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예시된 교과목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취급함

3)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음(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조)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③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④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

4) 사회복지사의 채용

- 사회복지사의 채용은 민간복지 분야와 공공복지 분야로 구분됨

(1) 민간복지 분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

- 단, 다음과 같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의 의무 채용이 제외됨

사회복지법제

9주차 1차시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I)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관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과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2) 공공복지 분야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 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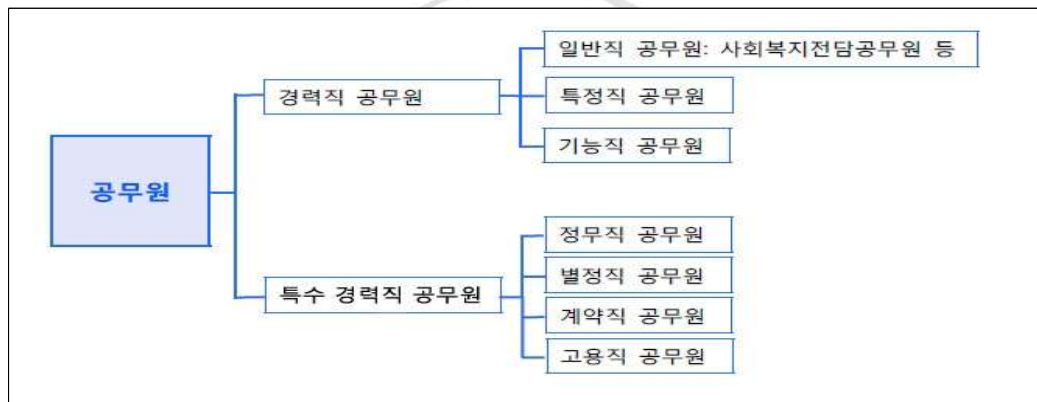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별함(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 이 중 사회복지사는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되고 사회복지직렬에 속함(국가공무원법 제5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 단,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격에 의해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받음

<공무원 구분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민간 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는 근로자로서 갖는 지위와 전문가로서 갖는 지위로 구분할 수 있음

1)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사회복지관련 민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
-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함

2)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시행령 제6조)

사회복지법제

9주차 2차시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II)

*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에 차이가 있음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이 보장되고, 그에 따른 권한이 있는데, 크게 신분상의 권리와 직무집행과 관련된 권리 및 재산상의 권리로 구분할 수 있음

1) 신분상의 권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법률상 공무원인 관계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갖고 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신분상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또한 갖고 있음

-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5조)
- ②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해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지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함

(1) 직무수행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며, 따라서 당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무원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됨

(2) 직무보유권

- 직무보유권은 자신에 적합한 일정한 직무를 부여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가 법이 정한 일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임
- 일반적으로 직무부여는 당해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부서의 인적사정이나 국가 전체의 공무원수급계획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음

3) 재산상의 권리

- 공무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권리를 갖고 있음

(1) 보수청구권

- 사회복지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수행의 대가로 국가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

(2) 연금청구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직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함(국가공무원법 제25조)

(3)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이외에도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등 각종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받을 권리가 있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 >

종 류	정 의	내 용
단기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기급여	공무원의 퇴직, 폐직 및 사망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4) 법적 권한의 제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또는 근로기본권의 제한을 받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원 자격이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자격을 상실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

*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

1. 민간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각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에 의해 부여받고 있음
- 또한 이는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법인이나 시설과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회복지법제
9주차 2차시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II)

의무의 종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반적 의무	① 선서의무 ② 성실의무 ③ 품위유지의무 ④ 청렴의무
직무상 의무	① 법령준수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직무에의 전념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① 직장이탈금지의무 ②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③ 정치운동의 금지의무 ④ 비밀엄수의무 ⑤ 전문성개발의무

1) 신분상의 권리

- 민간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국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과는 달리 주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음

- 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면직 예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사회복지사가 직권면직, 직권휴직,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다.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 사회복지사는 기관 내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통상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부여된 직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단,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3) 재산상의 권리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제공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
-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서만이 아니라 생활보장적인 성격과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는 보수를 받는 이외에 기관운영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가 있음

4)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 사회보장제도와 기본법

1.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해

1) 사회보장의 의미와 사회보장법의 탄생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어원적 의미는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의미가 일반적임, '타인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 백과사전적 의미는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예, 의료보험)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이라고 정의함
- F. D. Roosevelt 대통령이 1934년 6월 미 의회에서 뉴딜(New Deal) 정책을 설명하면서 사회보장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
- Social Security Act는 New Deal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이듬해인 1935년에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이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음

2)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 관계

- 사회보장의 협의의 역할
 - 사회복지의 자본주의의 발달로 생겨난 경제적 문제에서 유발된 모든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의 예방과 해결이라고 한다면,
 - 사회보장은 그러한 사회복지의 광의적 범위 중에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나 문제를 예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범위로 이해 할 수 있음
- 사회보장의 생성 배경
 -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의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 하는 또 다른 부수적 권리임
 - 이러한 기본권은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그 정치적 이념으로 주장되어 온 것임
 -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약화', 즉 '국가 권력의 비대화 수정'을 보장 기반으로 함. - 사회 보장의 기본이 되는 자유권과 생존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획득한 자유권과 자유권의 수반효과로 나타난 생존권의 탄생에서 생성된 것으로 정리 할 수 있음.

3) 사회보장 제도의 구성

- 사회보장의 구성 요소 : 사회보장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프로그램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사회보장의 범주에 불포함.
- 사회보장의 주체 :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될 것임.
 - 헌법(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보장 기본법(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 사회보장의 대상 : 모든 국민. 발달과정을 보면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대에 들어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름.
- 사회보장의 시행 방법 : 보험의 원리에 따른 사회보험과 무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를 내용으로 함
- 사회보장의 급여 수준과 방법의 원칙 : 수급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성의 원리'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반영함이 타당시 됨.

사회복지법제

10주차 1차시 - 사회보장 기본법(I)

- 베버리지 보고서(p120) "보장금의 지급이 소득의 중단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낼 수 있는 조치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사회가 빼앗아 가는 것은 오히려 불의이고 해악일 수 있음. 자립과 독립 지원의 원칙 필요.
- 사회보장의 내용 : 물질적 급여를 통한 소득 보장을 본질적 원칙으로 함.
- 전문적 서비스와 일상생활의 서비스는 사회보장의 급여는 아님.(박석돈, 2010: 18)
-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점이 확대되고 있어 사례별로 다양화 될 수 있을 것임

2.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

1) 사회보장 입법의 기본 이념

- 최저 생활보장의 기능
 - 최저생활의 규정을 위한 빈곤선의 설정 필요
 - 빈곤선 이하의 소득계층인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발전
 - 사회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역할 수행
 - 자유·평등·우애라는 시민운동의 기본 이념 실현
 - 사회통합을 통한 공동체의 형성
 - 소득 재분배 기능 수행이 가능한 입법
 -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발생이 가능해야 함
 -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산정의 표준소득월액표의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고 누진제가 채택되지 않고 있음은 문제임
- (1995년 4.1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시행령의 표준소득월액의 내용)
1. 소득 구간 : 1~45등급
 2. 소득액 : 225,000원(1등급) ~ 3,450,000원 이상(45등급)
 3. 표준 소득 월액 : 하한선 220,000원(1등급) ~ 상한선 3,600,000원(45등급)
 4.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9% 19,800원(1등급) ~ 324,000원(45등급)

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있지만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구조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됨
- 1963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의미가 없었음
 - 개별 사회복지 법률들은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정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별 법률들은 각각 분리되어 법률 간,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함
 - 각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행정사무를 여러 부처가 분리하여 관장함으로써 제도 간 통일이 결여되었고, 부처 간 사회복지제도의 부분적 중복 현상과 급여의 중복지급 현상까지 초래
 - 사회복지행정이 각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 간 또는 제도가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동일 대상인 국민에 대해 제각기 적용기준이 달라 국민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
- 사회복지법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은 물론 각 제도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

사회복지법제

10주차 1차시 - 사회보장 기본법(I)

3. 사회보장 기본법의 입법과 제정

1) 의의 및 기능

-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적 규정을 토대로 사회보장에 관한 실정법을 직접적으로 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헌법과 사회복지관련 개별법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은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보장의 일반법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법체계는 통합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분립적인 법률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개별적인 사회보장법률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법이념, 공동원칙, 권리-의무관계, 용어정리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기능수행

2)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年)

-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사회보장제 실시 선전을 위한 제정으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61년 생활보호법,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였으나, 예산의 확보 등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제정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 사회보장을 위한 법률의 제정 연혁 >

	기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1960			공무원연금법	
1961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1970				사회복지사업법
1977		의료보호법	의료보험법	
1981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1988			국민연금법	
1995	사회보장기본법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제

10주차 2차시 - 사회보장 기본법(II)

* 사회보장기본법과 수급권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1) 배경

•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은 시대적 요청이나 특정한 필요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상호 간에 연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법령, 제도간의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회보장법령과 제도 간 연계성 도모하여 상충과 갈등을 막아 통일성, 일관성을 가짐

2)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3) 기본이념

• 사회보장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이념을 갖고 있음

- ① 사회보장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 보장
- ② 국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 ③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함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의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4) 사회보장법의 구성 내용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관련 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함

2.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함

2) 국민의 책임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제7조)

3. 사회보장 수급권과 급여 신청

1) 사회보장의 대상(수급권자)

-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동 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임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관련복지급여청구권으로 구성되는 실체적 권리임
- 사회보장수급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음

2) 급여 수준

- 국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향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
-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가나 경제적·사회적 수준에 비추어 적절해야 할 뿐 아니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제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3) 급여의 신청

-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함
- 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봄

4)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 수급권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짐
-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으며, 제한, 정지될 수 없음

사회복지법제

10주차 2차시 - 사회보장 기본법(II)

- 기관에 서면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할 수도 있음. 단, 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포기할 수 없음
-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의 발생이 수급권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나 불법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범위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함

4. 사회보장 기본법의 운영과 심의 위원회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운영

1) 기본법의 운영 원리

- 보편성: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
- 형평성: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 및 비용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 유지
- 민주성: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함
- 효율성
- 연계성 및 전문성: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복지의 효율적 충족위해 연계성, 전문성 갖추

2) 사회보장 역할의 조정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3)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구분		책임주체	비용분담
사회보험		국가	1. 원칙 : 사용자, 피사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 2. 예외 :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사회복지서비스	일정소득이하의 국민		
	부담능력이 없는 국민		1. 원칙 : 수익자가 부담 2. 예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목적

-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임
- 각종 사회보장 관계 주요 시책을 계획하거나, 개선하는 과정 등에 있어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보다 양질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역할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 ①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발전 방향
- ②사회보장제도 개선
- ③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 ④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 ⑤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부담
- ⑦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 사회보험법의 목적과 의의

-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 함
- 사회보험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

< 사회보험의 주요 특징 >

- ① 강제가입을 법으로 규정함
- ② 일종의 예방적 보장의 의미를 갖고 있음
- ③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여기에 따라 급여가 제공됨
- ④ 비영리적 국가사업
- ⑤ 소득재분배와 사회통합의 목적

2.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특성

-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보험원리를 도입하여 확정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임
-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은 일정한 보험료 및 기여금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으로 하여 소득능력이 감퇴 또는 상실된 가입자나 그 유족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한 형태

사회복지법제

11주차 1차시 - 사회보험법(I)

2) 국민연금의 대상과 급여

(1) 가입 대상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함 ·가입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 ①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 ②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60세에 달한 가입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가입신청을 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 ③농어민으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70세에 달할 때까지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④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가 2000년 3월 31일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외국인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음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임.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국민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①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②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광부, 선원) ③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수급자 ④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가입자 종류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함 ①당연적용사업가입자 ②당연적용사업장의 임의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됨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서 제외된 사람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음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때에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임

(3) 보험급여의 종류

사회복지법제

11주차 1차시 - 사회보험법(I)

- 국민연금의 급여는 그 지급 방법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그 중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음

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
	감액노령연금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때
	재직자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60세에 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에 의해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
	특례노령연금	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배우자 연금분할제	이혼 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잉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장애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상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유족연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할 때 지급 ①노령연금수급권자 ②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③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④가입자	
반환 일시금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 청구에 의해 지급 ①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③10년 미만 가입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④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된 때	

(4) 연금산정 방법

- 연금의 산정방법은 균일급여방식과 소득비례급여방식, 그리고 이들의 혼합방식 등 세 가지로 분류함

- ① 균일급여방식은 모든 가입자나 수혜자의 소득 또는 부담하는 보험료의 고저에 상관없이 연금 급여는 최저생계비만 보장하고, 그 이상의 소득보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본인 각자가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
- ② 소득비례급여방식은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따른 능력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가입자의 기여금에 비례하여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방식
- ③ 혼합방식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는 균일방식으로 보장하고 그 이상의 급여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담한 기여금에 따라 급여를 산출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형 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데, 기본연금은 평균소득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혼합급여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5) 연금의 산정

-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함

-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설계됨
 - ①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균등부분
 - ②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소득비례부분
 - ③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가산부분
- 부양가족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로서 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피부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됨

(6) 재원 조달과 재정 운용(비용 부담과 연금보험료)

- 연금재원의 조달방식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있음
 - 부과방식: 매년의 급부금액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
 - 적립방식: 장래에 대하여 산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평균화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보험료에 비하여 연금발족 당초의 급부지출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방식

(7) 연금보험료 부과기준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됨
-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의 구분

지역가입자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한 총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자영업자, 전문직 등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지방행정기관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실상 추정하여 기준소득월액 산정
임의가입자	·가입자 간의 소득재분배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소득계층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매년 산정

3.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임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재활과 출산과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징

사회복지법제

11주차 1차시 - 사회보험법(I)

- ①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원리에 의하여 국민 각자의 소득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 · 징수 하지만, 개별 부담과는 상관없이 피보험대상자의 질병·부상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
- ②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 각자의 개별적 위험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공동체적인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수행

2) 국민건강보험법의 대상(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적용 제외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어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함
-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의 종류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

3)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 부가급여, 건강검진이 있음
- 보험급여는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뉘어짐.
 -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해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음
 -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수준별재정상한제,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보험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함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의 의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입은 부상 및 질병, 신체장해나 사망 등의 경우에 사회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법임
- 산업재해의 범위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 뿐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와 관련된 출장 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등 유해로 인하여 생긴 질병도 이에 포함됨

2)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

사회복지법제

11주차 1차시 - 사회보험법(I)

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에서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보험급여로 이행한다는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롯되기 때문임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보험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체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자가 보험가입자가 됨

당연적용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됨 ·당연적용사업장은 2001년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임 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련업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
임의가입자	·사업의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됨

3) 보험료의 산정 및 결정

- 보험료란 보험관장자인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사업분담금을 말함
- 다른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비용을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하는 것은 업무재해를 기업위험의 발현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 운영의 주체인 사업주에게 비용 부담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임
- 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에 사업집단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함
- 임금총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현금 이외 현물로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됨

4) 보험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종류가 있음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용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	--

사회복지법제
11주차 1차시 - 사회보험법(I)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데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의 85% 정도임.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용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함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해등급(1~3등급)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함 ·그러나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일시금을 지급함
유족연금	·산업재해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서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중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단,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함
상병보상 연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폐질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재기 의욕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의 실질적 향상급여라 할 수 있음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의 경우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해등급 1~3등급에 해당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더 높은 상병보상연금이 각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됨
장의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여 ·장의비는 당해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직업 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직업훈련수당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을 말함

1. 고용보험법

1) 법의 의의

- 많은 선진국에서 전통적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 사업까지 고용보험제도 내에 포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음
- 다른 나라는 사업의 성격 변화와 관계없이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의 적용 범위

(1) 적용 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 그러나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적용제외사업은 다음과 같음

-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②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 2천만원 미만의 공사, 그리고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③ 가사서비스업

사회복지법제

11주차 2차시 - 사회보험법(II)

(2) 적용대상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사업장 특성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임. 다만, 국내 거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당연적용 대상임 ·또한 국내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됨

3) 보험료

(1) 보험료의 징수

-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함
- 보험료는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 고용보험료는 보험 연도마다 그 1년 동안 적용사업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2) 실업급여

- 실업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실시함

구직급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훈련연장급여		·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 촉진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될 것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주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법의 필요성과 목적

-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함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법제

11주차 2차시 - 사회보험법(II)

2) 법의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의 비교>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등)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등)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등의 적정여부심사후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 (사후 정산)

○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두고 있음

-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
-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
-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

3) 용어의 정의

- ①노인 등: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②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 ③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 ④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장기요양인정

사회복지법제

11주차 2차시 - 사회보험법(II)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를 말함

(2) 장기요양의 신청과 신청의 조사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함

(3) 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요양 인정서

- 공단은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함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함

<등급판정기준>

등급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5점 이상 75점 미만

5) 장기요양급여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자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사회복지법제
11주차 2차시 - 사회보험법(II)
(2) 시설급여

구분	장기요양 급여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수급자의 신체·정신 또는 성격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
특례 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그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

1. 공공부조의 의의

1) 공공부조의 개념

-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나 발전의 목적이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수준을 보장하며 나아가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목표임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3호).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3) 기본 원리

- 생존권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 공공부조의 기본적 이념은 파생적 원리를 동반하게 되고 운영상의 원칙을 파생시키게 됨.

<표> 공공부조의 이념 요약

기본적 이념	파생적 원리	운영상의 원칙
보편 적용		
최저생활 보장	필요 적응	개별성과 구체성
국가 책임	보 충 성	자산, 근로능력의 활용, 사적부양의 우선, 타법우선적용
	자활 조성	

(박석돈, p127)

2. 공공부조의 특징

1) 공공부조의 특징

- 공공부조는 사회부조, 공적부조, 국민부조 등으로 불리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의 범위를 정하면서 공공부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수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임
-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임
-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함
- 수혜자들은 프로그램의 재원을 위해 자신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음
-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임
-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규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

사회복지법제

12주차 1차시 - 공공부조제도(I)

- 공공부조법은 빈곤해결에 있어 최후의 보루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또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소위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임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의 양축의 역할을 하며 상호보완적 관계 가짐
- 사회보험은 고용되어 있는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공공부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 수혜 자격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지만 공공부조는 자산조사(meanstest)의 엄격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행해짐
- 운영에 있어 사회보험은 정부나 위탁관리 기관이 하지만 공공부조는 언제나 국가가 운영주체가 된다.

구 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대 상	모든 국민(근로능력이 있는 자)	빈곤층(근로능력이 없는 자)
재 원	법으로 정해진 기여금·부담금(일부조세)	조세
수급권리	법적 권리	법적 권리
급 여	피보험자의 수요와 재정상태에 구애됨이 없이 법적 규정에 의해 보험금 지급 →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 가능	희망자의 수요에 따라 법정금액을 지급 → 수급여부 및 수급액의 예측 불가능
자산조사 필요성	불필요	필수조건

3) 공공부조의 권리성

- 공공부조수급권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헌법상의 규정임
- 따라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들이 최소한 최저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과학적 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줌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은 과거의 생활보호법상의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에서 벗어나 구체적 권리는 아니지만 추상적 법적 권리로 그 권리성이 일보 진전되었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 목적과 성격

- 공공부조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인정함을 전제로 하고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장애인 및 그 밖에 생활보장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법적으로 국민은 누구나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갖는 법적 의의는 다음과 같음

- ①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
- ②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 ③ 종합적 빈곤대책: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근로조건부로 급여를 제공하여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함

2) 입법 배경

-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비곤 문제 악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을 생존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의 필요
-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 경제성장률 둔화, 실업률 상승, 빈곤율 상승
- 생산적 복지정책 개념의 채택: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며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

사회복지법제

12주차 2차시 - 공공부조제도(II)

3) 급여의 기본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급여의 기본원칙으로 체계화해보면 다음과 같음

보충성의 원칙	·기초생활보호법은 여타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보충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급여는 수급자가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타법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은 최종적으로 적용됨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함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의 생활보장을 모든 국민이 똑같이 누리게 하기 위한 원칙임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무차별평등의 원칙	·모든 국민이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빈곤에 대응하여 포괄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존권 이념에 입각한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소를 충족하는 한 급여는 평등하게 행하여져야 하며, 생활 빈곤의 주관적 원인을 묻지 않고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태라는 객관적 요건만 있다면 됨
공공책임 원칙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원칙임 ·따라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는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임

4)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급여의 불리한 변경의 금지, 압류 금지, 양도 금지, 신고의 의무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생계급여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지급
주거급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 지급
의료급여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지원,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
해산급여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대한 급여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를 행하는 것임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 지급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의 급여

2. 의료 급여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차상위 계층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재해보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

사회복지법제
12주차 2차시 - 공공부조제도(II)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	---

1) 의료 급여법의 의의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으로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공부조 제도의 일환이며,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영역을 점하고 있음
- 의료급여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수급권자

-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함
-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는 경우에 따라 부담액 또는 부담률을 정해서 부담토록 함
- 중복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료급여의 내용 및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변경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진찰, 검사	②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③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 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의료급여기관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등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4) 급여의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함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급여의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함

6) 급여의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함
- 보호기관이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① 보충성의 원칙
- ② 타법 우선의 원칙
-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④ 무차별평등의 원칙
- ⑤ 공공책임의 원칙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법을 말함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

-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법과 구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가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인 급여가 주류를 이룸
- ②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점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
- ③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 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 사회복지사업은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제

13주차 1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 ·의료급여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 ·긴급복지지원법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은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 하여도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개별 법률들의 기본적 사항을 통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
- 복지 20개법의 개별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이며,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2)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조직과 관련된 체계를 말함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됨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위원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복지위원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시설

(1) 사회복지법인 설립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제

13주차 1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

(2)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3.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1] 영유아보육법

1) 목적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

2) 관련 행정기관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보육정보센터: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함

3) 보육시설

(1) 보육시설의 종류

국·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민간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
부모협동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정하여 설치·운영

(2) 보육시설 입소대상 및 우선 이용자

-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필요의 경우에 따라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3) 보육시설의 종사자

- 시설의 장, 보육교사와 기타 여성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함
-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제

13주차 1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

-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4) 비용의 부담

- 저소득층자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
- 무상보육 특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과 양육수당, 무상보육의 특례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음

[2]아동복지법

1)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
- 이 법은 구법인 아동복지법이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아동 뿐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임

2)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및 책임

- 아동복지법은 무차별 평등이념,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 강조, 아동 중심적 활동을 기본 이념으로 함
- 책임의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건강, 복지 증진,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 위한 시책
 - 아동의 보호자: 가정 안에서 성장 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
 - 모든 국민: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이동을 건강하게 양육

3) 아동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① 아동복지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 ④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⑤ 약물 및 알코올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함

사회복지법제

13주차 1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

4) 아동 관련 행정기관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아동위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함 명예직이며 수당지급은 가능함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둠

5)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 보호, 양육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일시보호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의 우려가 있는 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자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시킴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 시 아동을 단기가 보호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
아동전용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
아동복지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4. 노인복지법

1) 목적 및 이념

(1) 목적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는 노인의 보건문제와 질병의 치료문제, 생활안정문제를 노인문제의 핵심적 문제로 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임을 알 수 있음

(2) 이념

-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고 있음
 -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법의 운영

(1) 노인의 보건복지조치

노인 사회참여사업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써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함
경로우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음
건강진단 등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치매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제

13주차 1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

(2) 비용의 부담

-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임
- 노인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음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요건은 아래와 같음

종류	설치요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노인의료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자를 제외)에 한하여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1. 장애인 복지법

1) 법의 목적과 이념

(1)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룸

(2) 기본 이념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차별금지
·동등한 처우보장
·능력 발휘 및 자립 촉진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
·사회연대책임
·정보에의 접근

2) 기본정책의 강구

장애 발생 예방	장애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인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의 강구
의료 및 재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 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 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직업재활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사회적 인식 개선	학생, 공무원, 근로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편의시설과 안전대책 강구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제

13주차 2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I)

3) 장애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존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보전이 필요한 자여야 함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1) 주요 내용

(1)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 접근권

-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3)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및 부대시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3. 건강가정 기본법

1) 목적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과 가족 실태 조사

-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가족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2) 건강가정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가정에 대한 지원
 -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가족 단위 복지 증진
 - 가족부양의 지원
 -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 등의 지원

3) 건강가정전담조직

(1) 건강가정지원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건강가정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2)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함
-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4. 한부모가족지원법

1) 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특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함

3) 주요 내용

(1) 고용의 촉진 및 고용지원과의 연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비용과 보조금

(1) 비용의 부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보조금의 반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시설의 장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회복지법제

13주차 2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I)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하나의 법체계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은 피해자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주요 업무

- ①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②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
- ③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④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 ⑤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홍보

(2)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 ①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보호시설의 업무와 치료보호를 할 수 없음
- ②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됨
- ③ 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④ 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보호시설의 종류>

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개월 범위에서 보호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하여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 편의 제공
외국인 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 범위에서 보호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 피해자 등을 2년 범위에서 보호

3) 비용의 보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제

14주차 1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III)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지원시설

(1)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지원시설의 종류

일반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외국인여성인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3월 이내에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 시설

3) 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 비용의 보조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1)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필요한 자원 조달
- (2)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3)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1) 특수강도강간 등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때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때 :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2) 특수강간 등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형법 297조)의 죄를 범한 자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형법 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299조)의 죄를 범한 자 : 징역 3년 이상

(3)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친족관계 :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 강간의 죄(5년이상),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죄(3년 이상)

(4) 기타

○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 형법 297조(강간, 3년이상), 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형.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의 죄 : 7년 이상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다음의 죄 : 5년 이상

*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

○ 강간 등 살인·치사 :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 통신매체 이용 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말, 그림,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죄 :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전시, 상영한 죄 :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5)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그 외의 자는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 설치하고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가능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 목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입법 배경

○ 관 주도 성금모금 및 관리 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 중심의 이웃돕기 운동의 자율성 보장과 민

사회복지법제

14주차 1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Ⅲ)

간참여 활성화 지향

- 기존의 자선사업기금, 개별 후원금과 공동모금의 중복 예방과 공정·투명한 배분 관리 필요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사업 내용

-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함
-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登記함으로써 설립됨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및 모금재원의 배분
-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교육훈련
- 지회의 운영,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4) 재원의 조성과 사용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기타 수입금
- 공동모금 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함
-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당해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모금회법 25조 2항 단서, 3항)

4. 정신보건법

1) 목적

-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기본이념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
- 자발적 입원이 권장
-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게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 보장, 자유로운 의견 교환 보장

3) 보호 및 치료

(1) 보호자의 의무

- 피보호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며,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 아니 됨
- 정신질환자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정신보건전문요원

-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제

14주차 1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Ⅲ)

-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구분함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음

종별	업무의 범위와 한계
공통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직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 관리 활동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5. 교정복지

1) 목적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 및 갇혀 보호 등 체계적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 원호를 함으로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대상자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자, 또는 가석방, 가퇴원된 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사회봉사·수감명령대상자	집행유예를 받은 자, 소년법에 의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자, 다른 법에 의하여 받도록 규정된 자
갱생보호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 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3) 사회봉사명령과 수감명령

(1) 사회봉사명령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형의 선고, 보호처분 또는 이에 부수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사회복지법제

14주차 1차시 -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Ⅲ)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주거·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사회봉사명령의 종료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된 때,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임

(2) 수강명령

- 수강명령은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범죄인들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수강센터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말함
- 수강명령은 형법의 의한 경우와 소년법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3) 갇생보호

- 갇생보호는 범죄인에 대한 비강제적인 사후보호로서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고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경제적·정신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형사정책 사업이며 사회복지적 사업임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법인

1) 법인의 의의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 특수 재단법인, 공익성, 공익법인임
- 즉, 사회복지법인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로부터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된 자원을 책임성과 권리성을 갖고 활용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 및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서 사업의 운영 또는 지원에 국한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사업은 비록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

-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법인과 지원법인 두 종류가 있음.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법인으로 구별됨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적용 순위는 특별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순임
-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함
- 이사회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 각각 연임 가능
-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함
-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제

14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2)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 인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3)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시설의 설치는 신고주의에 입각함
-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함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둠
-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수용인원은 300인을 초과할 수 없음

2.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정의함
- 사회복지시설은 과거에 요보호대상자가 자신의 가정을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에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평생 생활하는 방식이 주였으나,
- 오늘날은 요보호자가 가정에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2)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 사회복지시설은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할 수 있음
 - 생활시설: 요보호자를 수용하여 24시간 보호하는 주거서비스를 비롯하여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이용시설: 주거서비스 이외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 사회복지시설은 나름대로의 존재 의의와 사회적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시설생활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역할
 - 시설보호는 그 유형에 따라 단순한 생명의 안전이나 유지 차원에서부터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함
 - ②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역할

사회복지법제

14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실정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 시설의 통과적 기능강화 등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지원해 나가야 함

③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역할

시설은 지역사회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킴

④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교육적인 역할

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시설생활자와 주민이 함께 하는 체험의 장으로 제공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1. 사회복지법제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1) 사회복지법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 모든 선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사회복지법제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관심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① 높은 질의 복지를 제공해 달라는 국민 요구의 충족
 - ② 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국민 요구의 충족
 - ③ 경제발전의 유지와 증진
 - ④ 집권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의 유지 및 개선
- 이러한 관심사들을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어느 한 가지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되, 나머지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는 효율적 행정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효율적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사회복지법제임

2)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 1970년대의 경기침체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여 보편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를 끝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또한 이를 계기로 현실적인 복지국가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게 하였음
-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 패러다임과의 차이점
 - ① 공공지출의 크기는 현 경제성장 수준에 맞추어 결정되어야 하며, 공공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욕구가 아니라 자원임
 - ② 직접 세율은 가능한 한 낮게 설정되어야 함
 - ③ 민간영역과 자원영역이 국가영역의 보충물, 대체물 역할을 해야 함
 - ④ 수혜자의 참가와 선택을 최대한 늘려야 함
 - ⑤ 공공서비스는 최대한의 돈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함

2. 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제도 및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총칭하는 것임
- 국가는 사회복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집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추상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14주차 2차시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법제 형식을 갖추어 표현하여야 함

- 이러한 사회복지법제에 근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사회복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천되는 것임
- 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는 다음과 같음
 - ① 권리 규정의 강화
 - 국가는 복지급여에 대한 책임이 미약하고, 권리보장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먼저 각종의 사회복지법에 규정된 임의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임
 - ② 사회보장의 전문법원 설치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소관련법 혹은 소송법의 입법화 필요
 - 현재는 행정소송에서 취급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절차법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름
 - 따라서 복지대상자들의 욕구가 다양하여 사회복지법제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의 확보를 위한 사회보장관련법제 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회보장법원이 설립되어야 함
 - ③ 복지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의 확대
 - 복지대상자의 요건과 범위가 많이 향상되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대상자의 자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자의 범위는 현행법상 시행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권리가 대통령령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제를 규정하여야 함
 - ④ 사회보장법제 관련 국제적 가입과 협의
 -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보장관련법제의 국제적 협약을 맺고 도입을 하여 거기에 자국의 국내법제의 조정과 연계를 수립하고 있음
 - ⑤ 직무집행제의 도입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자유재량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복지 증진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치해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사회복지관련법제에서 지방분권에 따른 공공책임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게 하는 통제 제도를 강구하여야 함